

제400회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 1 호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2년9월15일(목)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76)
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43)
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38)
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36)
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28)
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4)
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41)
8.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9)
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5)
1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40)
1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7)
1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08)
1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44)
1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25)
1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2)
1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46)
1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97)
1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54)
1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1)

2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0)
2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2)
2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9)
2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88)
2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48)
2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47)
2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2)
2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08)
2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6)
2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8)
3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30)
3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8)
3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51)
3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1)
3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1)
3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45)
3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0)
3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13)
3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32)
3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9)
4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77)
4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80)
4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21)
4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0)
44.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97)
45.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44)
46.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63)
47.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943)
48.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2)
4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96)
50.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94)
5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55)
52.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51)
5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7)
54.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35)
55.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45)
56.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67)
57.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90)
58.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50)
59.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4)
60.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7)
6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41)
6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62)
6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90)

6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1)  
 6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110)  
 6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104)  
 67.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8)

### 상정된 안건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76) ..... 5
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43) ..... 5
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38) ..... 5
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36) ..... 5
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28) ..... 5
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4) ..... 5
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41) ..... 5
8.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9) ..... 5
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5) ..... 5
1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40) ..... 5
1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7) ..... 5
1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08) ..... 5
1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44) ..... 5
1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25) ..... 5
1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2) ..... 5
1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46) ..... 5
1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97) ..... 5
1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54) ..... 5
1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1) ..... 5
2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0) ..... 5
2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2) ..... 5
2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9) ..... 5
2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88) ..... 5
2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48) ..... 5

|                                                                |   |
|----------------------------------------------------------------|---|
| 2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47)                 | 5 |
| 2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2)                 | 5 |
| 2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08)                 | 5 |
| 2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6)                 | 5 |
| 2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8)                 | 5 |
| 3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30)                 | 5 |
| 3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8)                 | 5 |
| 3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51)                  | 5 |
| 3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1)                  | 5 |
| 3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1)                        | 6 |
| 3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45)                  | 6 |
| 3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0)                  | 6 |
| 3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13)                | 6 |
| 3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32)                | 6 |
| 3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9)                | 6 |
| 4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77)                | 6 |
| 4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80)                | 6 |
| 4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21)        | 6 |
| 4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0)        | 6 |
| 44.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97)                | 6 |
| 45.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44)                   | 6 |
| 46.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63)                   | 6 |
| 47.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943)                         | 6 |
| 48.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2) | 6 |
| 4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96)  | 6 |
| 50.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94)  | 6 |
| 5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55)                 | 6 |
| 52.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51)                 | 6 |
| 5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7)                  | 6 |
| 54.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35)                  | 6 |
| 55.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45)                  | 6 |
| 56.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67)                   | 6 |
| 57.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90)                   | 6 |
| 58.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50)                   | 6 |
| 59.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4)                   | 6 |
| 60.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7)                   | 6 |
| 6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41)    | 6 |
| 6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62)    | 6 |
| 6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90)    | 6 |
| 6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1)    | 6 |
| 6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110)                         | 6 |
| 6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104)                | 6 |
| 67.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8)     | 6 |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전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전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속기록 작성 등을 위해 직위와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76)
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43)
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38)
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36)
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28)
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4)
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41)
8.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9)
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5)
1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40)
1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7)
1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408)

1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44)
1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25)
1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2)
1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46)
1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97)
1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54)
1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1)
2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0)
2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2)
2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9)
2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88)
2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48)
2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47)
2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2)
2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08)
2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6)
2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8)
3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30)
3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8)
3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51)
3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1)

3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1)
3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45)
3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0)
3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13)
3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32)
3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9)
4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77)
4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80)
4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21)
4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0)
44.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97)
45.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44)
46.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63)
47.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943)
48.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2)
4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96)
50.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94)
5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55)
52.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51)
5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7)
54.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35)

55.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45)
56.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67)
57.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90)
58.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50)
59.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4)
60.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7)
6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41)
6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62)
6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90)
6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1)
6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110)
6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104)
67.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8)

○소위원장 김승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67항까지 모두 67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14건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법안심사소위 자료 I권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심사 경과입니다.

이 법안 14건 중 4건에 대해서는 작년 3월 19일 날 법안심사소위가 한 차례 이루어졌습지만 당시 농식품부가 대안을 마련하여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고 그 이후 10건이 다시 들어와서 오늘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14건 중 4건은 기본직불금 수령실적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5건은 직불금 수령실적 요건은 유지하되 대통령령에 예외를 인정해서 완화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5건은 직불제의 종류를 확대하거나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 중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직불금 수령실적 요건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중 종전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실적이 있는 농지로 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과거의 직불금 수령실적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거나 직불금 수령실적 요건은 유지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과거 직불금을 받지 못하였음을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하거나 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실경작자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불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참고로 17~19 사각지대 해소 시 농지는 17만 4000ha가 추가되고 대상 농업인은 기존 25만 8000명에서 신규로 30만 4000명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17~19년 농지 요건을 삭제하는 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구 정리와 관련해서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참고자료입니다—개정안 중에서 조건불리직불제에 관한 3호의 경우에는, 1호는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으로, 2호는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3호 조건불리지역의 경우에는 단순히 ‘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으로만 표시되어 있어서 기준연도가 직불제마다 각각 다 다른데 이 경우 혼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건불리지역 내의 농지임을 제3호에 추가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가 수정의견을 냈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서 직불금 지급대상이 확대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장관이 농업인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직불금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할 수 있는 수

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요건 중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직불금 수령실적 요건을 삭제하거나 또는 완화하는 내용 그리고 관외경작자에 대한 직불금 지급대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권성동 의원안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요건 중 2016년부터 19년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실적이 있을 것을 요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고, 윤재갑·하영제 의원님 안은 직불금 수령실적 요건은 유지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으로 인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권성동 의원안의 경우에는 오히려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인정 범위가 좁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 등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거나 2016년부터 19년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직불금 수령실적이 있는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직불금 수령실적 요건을 삭제하는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추가적으로 배제되는 농업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재갑·하영제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농식품부는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종전의 직불금 수령실적이 없더라도 후계농·전업농 또는 전업농 육성 대상 등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이미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으로 인정되고 있어서 개정안과 같이 대통령령에 별도의 예외 사유를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법 개정은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 개정안은 관외경작자에 대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두고 있는데 농식품부는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면서 농업을 부업 또는 취미로 하는 경우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농지 요건 및 농업인 요건 관련 개정 규정의 소급 적용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수용할 시 개정 사항의 적용 대상을 2020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기

위한 부칙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 및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 12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이 완료되어야 직불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의 농지 형상 확인 및 출하된 농산물에 대한 농약·화학비료 등 안전성 기준 점검 등이 불가능해서 소급 적용의 현실성은 낮다는 입장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소농직불금의 지급단가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소농직불금의 지급단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 12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급단가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그 금액을 240만 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소농직불금의 농가당 지급단가를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증액함과 동시에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현행과 같이 법률에는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등의 원칙만을 규정하고 지급단가는 하위 법령에 규정해서 재정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의 종류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에 따른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성되고 그중 선택형 공익직불제의 종류로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선택형 공익직불제의 종류에 개정안들은 운송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작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식량안보직불제, 탄소중립직불제, 고령중소농업인농지이양은퇴직불제, 청년농업인직불제 등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농촌의 고령화, 식량안보 위기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년 농업, 식량안보형 농업과 탄소중립형 농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 식량안보 및 탄소중립 등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은 인정하나 선택형 공익직불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본형 공익직불제와의 관계 및 중복성 여부, 직불제와 타

정책 수단 간의 효과성 비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고, 특히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신설과 관련해서는 종전의 조건불리직불제는 2020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통합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공익직불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 이외에 청년농업인 공익직불제도를 새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의 유입 및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소득 보전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2018년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는바 청년농업인 공익직불제 도입을 위해서는 제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공익직불제 운영 심의위의 심의사항으로 선택직불제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공익직불제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선택직불제의 종류, 선택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지급요건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 제23조는 공익직불제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내용인 선택직불제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현행법 시행령에서 선택직불제의 종류, 지급대상 및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법률에서 추가할 필요는 없다는 반대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법률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감안’을 ‘고려’로, ‘입회’를 ‘참관’으로, ‘작목’을 ‘재배작물’로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일본식 용어나 한자식 용어를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가까운 용어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페이지별로 입장을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있는 농지 요건 중 17년부터 19년까지의 요건을 삭제하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조건불리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를 조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직불제법 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을 같이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요건 중에서 16년부터 19년까지 수령실적 요건을 삭제하는 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드리기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일반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16년에서 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 이 조건을 충족하거나 아니면 저희 시행규칙에 있는 '후계·전업농 또는 전업농 육성대상자' 또는 '등록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한 자'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일반 농업인들이 대부분 직불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16~19년 요건을 빼면 오히려 일반 농업인들 중에 빠지는, 그러니까 직불금을 못 받게 되는 그런 농가들이 좀 많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은 2007년도에 그때 직불금 부당수령이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감사원 감사도 하고 국정조사도 하고 그런 결과 생긴 규정입니다. 그래서 도시에 거주하는 관외경작자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과거의 경험이나 배경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40쪽입니다.

농지 요건과 농업인 요건 관련된 개정 사항의 소급 적용은 기본적으로는 직불금을 주려면 농업인의 자격 검증이나 준수사항의 점검이 필요한데 현재 상태에서 과거의 것들을 소급해서 점검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42쪽입니다.

소농직불금의 지급단가를 법률에 규정을 하고

240만 원으로 증액을 하자는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소농직불금의 지급단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예산과 관련도 있고 그다음에 얼마를 할 거냐라는 부분은 일반 국민이나 농업인들의 수용성 그다음에 규모화 같은 것에 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은 단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건 좀 무리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상황에서 또 120만 원을 240만 원으로 올리는 것도 좀 빠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선택형 공익직불제의 종류와 관련해서 현재는 법률에 선택직불제로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축산직불, 경관보전직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외의 여러 가지 직불을 법률에 규정하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선택직불제의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선택직불제를 법률에 규정을 하는 건 사실은 선택직불제의 도입이 확정되고 나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직불제의 명칭을 법률에 규정하는 건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46쪽의 청년농업인 공익직불제도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저희는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개편해서 청년농 직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도입이 확정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공익직불제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선택직불제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공익직불 운영 심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기본형 직불을 많이 다루는, 그런 내용들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택형 직불은 법률보다는 시행령에서 많이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무적으로는 이것을 꼭 법률에 규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혹시 특별한 또 다른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5페이지의 법률용어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원안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질의가 있으시거나 의견 개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위원장님, 제가……

○소위원장 김승남 예, 정희용 위원님.

○정희용 위원 정희용입니다.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2020년, 21년, 22년 못 받은 분들 입장에서는, 그때 본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못 받았다. 그래서 3년 동안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소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 또 중간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못 받았다고 저한테도 막 하소연하셨던 분이 그다음 해에 돌아가시고 이래요. 그래서 중간에 사망하신 분들 소급 적용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저희 생각은 기본적으로 아마 농업인들, 농민들 입장에서는 못 받은 게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긴 한데 저희들이 17~19의 지급실적을 직불금의 지급요건으로 한 게 위법한 행정행위나 판단이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부도 분명히 그게 어떤 장점과 문제점이 있는지를 그래도 나름대로는 파악을 한 상태에서 정책 결정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바꾼다고 해서 그 효과를 과거에까지 되돌리는 건 저희들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위법한 행정행위였다면 또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정책적인 선택을 했던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소급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희용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게 홍보가 덜 되거나 해서 몰라서 신청 못 하고 이런 분도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물론 못 받은 분들의 사례는 되게 다양할 거라는 생각은 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직불금을 저희들이 처음 도입을 했던 게 97년부터 도입을 했고, 가장 근간이 되는 논농업직불제 같은 경우에도 2001년도부

터 했기 때문에 벌써 20년이 넘게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더군다나 또 어떻게 보면 현금성 지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도 하고요.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가 100%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이유로 소급 적용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정희용 위원 중간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설명을 하셔야 되겠네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못 받고 돌아가셨으니까 그건 이제 방법이 없는 거네요.

○소위원장 김승남 안호영 위원님.

○안호영 위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말씀하십시오.

○안호영 위원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공익 직불제와 관련해서 실경작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어서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안호영 위원 저희들도 그 부분 해결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법안이 나온 거고요. 정부 입장이 지금 그런 건데, 그러면 이게 빨리 개정이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아까 농지 사각지대 해소할 때 농지 규모라든가 대상 농업인들은 나와 있는데 이게 만약에 개정이 됐을 때 예산, 그러니까 그간에 직불금을 받지 못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또 하루라도 빨리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혹시 내년 예산에 이것 관련된 예산 반영들이 지금 실제로 얼마큼 되어 있는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 17만ha에 56만 명 정도를, 저희들은 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쪽 추정을 한 결과 그렇게 결론을 낸 거고요. 다만 그 17만ha에 56만 명이 100% 다 신청을 할 거냐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로서는 장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입니다. 신청을 받아 봐야겠지만 그래도 거의 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요. 그랬을 때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는 대략 3032억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 그 예산은 현재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것으로 지금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 여기서 관련된 이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되어야 법안에 따라서 예산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법이 통과가, 그러니까 그걸 조건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박덕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42쪽인데 소농직불금 지금 예산이 얼마나 소요돼요, 이게 12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지금 120만 원이고 소농직불금을 받는 경영체 수가 한 4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은 한 5000억이 좀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면 240만 원으로 되면 배가 늘어난다는 거네요, 예산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찌 되었든 이 소농직불금이라는 게 0.5ha 미만, 그러니까 평으로 따지면 1500평 미만의 농사를 짓는 소규모 농가들에게 주는 거고. 사실은 소농직불금의 조건을 저희 나름대로는 좀 까다롭게 설정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결국은 300평, 400평, 500평만 농사를 지어도 1년에 120만 원을 준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사람이 인지를 하면서 일부러 농촌 지역에 있는 조그만 땅을 사서 농사를 지으려는 그런 경향도 되게 확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농가들은 하나의 농장을 여러 개 농장으로 쪼개는 겁니다, 소농직불금을 받으려고. 이게 단가가 좀 높으니까. 사실은 현장에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불법은 아니지만 정책적으로는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 규모의 증가보다도 실제 농업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을 감안하면 120만 원을 240만 원으로 늘리는 부분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덕흠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240만 원으로 하면 그런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그 부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염려도 있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그게 통계상으로 그렇게 늘어나는 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쪼개 가지고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막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전반적인 저희의 농가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또 같이 상쇄작용을 할 것 같아서 숫자는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저는 제도로, 시행령이라든지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모든 제도가 완벽한 제도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완벽한 제도는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이 다른 곳에도 다 있어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5000억 이상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소농들이 지금 사실 농촌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준비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차관님, 아까 정희용 위원님 말씀 주신 소급 적용하는 문제, 이 제도가 위법은 아니지만 허점이 있다는 것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에서 지금 입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보전이랄까, 이런 걸 치유해 주는 노력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위법은 아니지만, 정책적인 변동이기는 하지만 이게 문제가 있었다, 사실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했는데 이유야 여하튼 조건 때문에 혜택을 못 받은 것 이 부분을 좀 치유해 주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치유할 때 물론 돈 문제가 전제되겠지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검토하시고 소급 적용할 때 소요되는 재원이 얼마인지를 분석하시고 가능하면 입법할 때 이 부분까지 같이 감안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소농직불금, 우리 공익직불금의 문제 하면 역진성

문제를 기본적으로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농직불금이라고 하는 내용이 단순히 소농이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농토를 그동안 지켜 오신 분들, 특히 연령이 많으신 분들에 대한 복지적인 내용도 사실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입법안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농민연금을 주자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다행히 소농직불금이 그러한 기능들을 담고 있으니 그 내용을 좀 늘리고 또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이다.

대신에 그렇게 하는 내용이 입법적으로 한꺼번에 240만 원으로 올리는 것, 2배로 올리는 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수용 가능한 내용을 법률에서 명시하고 그 이상으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법도 입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5000억이어서 부담이 된다고 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기보다는 입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내용으로 하면 '120만 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렇게 단가를 정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정부에서 수용 가능한 지금 단가가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나 그리고 현재 공익직불제의 역진성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선택형 직불제와 관련해서 입법적으로 하는 내용을 가능하면 대통령령에다 위임해서 종류를 담고자 희망을 하시는데 의원들 입장에서 입법 발의할 때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잘 담고 있으면 이야기 안 하지요. 안 담기니까 그 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입법 발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받겠다든지 아니면 못 받는 이유가 명확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넣어 가지고 가자든지 이런 선택의 의견을 주셔야지 단순히 입법기술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은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지금 당장 하지는 못하더라도 저희가 직불금과 관련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맨 끝에 선택형 직불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입법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은 이게 법률에 규정이 되면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게 재량적인 사항일 수도 있고 의무적인 사항

일 수도 있지만 보통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 현재는 정부가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리스트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의원님들께서 주신 이것들 중에 한 4개 정도를 저희들도 올해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걸 예산 당국이랑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저희 계획대로 되지는 않고 전략작목 직불 그것 하나 된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일단은 저희가 선택형 직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형 직불제가 최대한 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도입이 확정되면 법률에 반영을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당장 하지 않고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 말은 안 맞아요. 여기서 논의하는 내용은 입법적으로 지금 처리하자,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검토해서 입법화하자 하는 취지의 의사 표시고요.

정부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공익직불금 2조 6000억을 5년 기간 동안에 늘리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도별로 보면 5000억~6000억을 예산 반영해서 늘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 반영된 게 3000억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2000억~3000억을 더 증액을 해야 원래 약속에 부합되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격 요건과 관련된 내용 17~19만 반영해서 3000억, 나머지 부분에서 한 3000억을 더 넣어야 사실은 정부에서 발표한 약속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관님이 돈 가지고 너무 인색하게 이렇게 답변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한 3000억 정도의 해당되는 내용을 이번 법령 개정하는 과정에서 담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약속한 내용대로 하면 답아야 맞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입법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다음은 이원택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차관님, 32페이지의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것 중에 그걸 삭제했을 경우 농업인 인정 범위가 좁아진다고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불금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오

랜 역사가, 그래도 한 20년 넘게 역사가 있다 보니 이 법 규정을 만드는 데 과거의 조항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따고 있는데 현재 공익직불법상에는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후계농, 전업농 등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16~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생각하는 일반적인 농업인들은 어떤 요건에 해당이 되어서 직불금을 받고 있냐, 1항이 아니라 2항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16년부터 19년까지 연간 한 120만 농가 정도가 직불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요건에 충족이 돼서 이제 직불금을 받는 거고, 새로 농업을 시작하는 사람이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후계농, 전업농 등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여기에 해당되어서 직불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에 16~19년 요건을 그냥 그대로 들어내 버리면 기존에 한 120만 농가, 120만 명 정도의 농업경영체들의 요건을 하나하나 설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과정에서 입법기술적으로 잘못하면 일부 농가가 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냥 이것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병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특별히, 정당한 이유로 역울함을 느끼는 어떤 농가가 있다면 그 농가들의 사례를 저희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농식품부령에 보완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농업인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가장 핵심 규정은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이원택 위원** 제가 취지는 알겠는데 사실 17~19 조항에서 1회 이상이라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었던 조항이지요. 그래서 이걸 삭제하자는 의견인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17~19 농지와 거의 비슷한 문제로

인식하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 부분을 만약에 삭제를 하게 되면 저는 아무튼 기존 농가들의 대다수가 이 조건, 한 110만에서 120만 가까운 경영체가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는 조금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린 말씀입니다.  
**○이원택 위원** 그런데 아까 차관님께서 예외적으로 해당되는 것을 좀 이렇게…… 그 예외라고 하는 것이 수집된 사례라든가 검토된 사례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저희들은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3700만 원 조건 때문에 직불금을 못 받는 사람의 민원은 많은데 이 부분 때문에 못 받는다, 그래서 문제다라는 사례는 저희 민원이나 이런 걸로 접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원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던 부분입니다.

**○이원택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접했던 내용 중에 사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사례는 못 봤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또 뭔가를 제약하는 사례가, 지금 농식품부도 검토된 사례는 없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러니까 민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사례로서 접한 경우는 없지만 굳이 상상을 해서라도 예를 만들자면 예를 만들 수는 있겠지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2015년까지는 농사를 짓다가 6·7·8·9, 한 5년에서 10년 동안 다른 데 가서 다른 직업에 종사를 하다가 다시 농사를 지으러 왔다. ‘나는 원래 농사를 지었었으니 직불금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조건하에서는 받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첫째 농사를 지을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는 첫째에는 직불금을 주지는 않지만 두 번째 해부터는 직불금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한 해만 직불금을 못 받을 뿐 두 번째 해부터는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피해의 정도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원택 위원** 혹시 좁게 해석해서 피해가 있을까 저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저도 선택형 공익직불제 관련해서 좀

크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사실 윤석열 정부가 이걸 5조까지 늘려 가겠다 이게 공약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이원택 위원 그러려면 이게 첫 출발이 내년 예산인데 사실 예산에 얼마큼 담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설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공익형직불제에 대한 설계가 있어야 됩니다. 설계가 있어서 그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단계별로 연도별로 어떻게 해서 끌고 가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선택형 공익직불제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농식품부가 설계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전략작물직불 이걸 어디에 해당됩니까? 선택형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지금 전략작목 직불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부분을 저희가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식량안보직접지불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여기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유형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식량안보직접지불제도에 가까운 직접지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면 이게 선택형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여기 제시된 조건 불리지역직불이라든가 또는 청년직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은 될 수 있지만 이것을 키워 가기 위한 설계가 필요하고, 지금 당장 전략직불을 넣느냐 마느냐 또는 17~19 조항에 대한 대응, 이렇게 지금 현안 대응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큰 틀에서 공익형직불제를 어떻게 확대 발전시켜 갈 건지에 대한 설계가 조금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야 연도별로 확대하는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연말까지 중장기 계획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업의 진도나 이런 걸 좀 살펴보고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중간보고라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저는 그건 제출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여러 가지 여기 나와 있는 직불 중에 식량안보직불하고 또 탄소중립 관련한 직불 같은 경우는 검토를 좀 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애매하게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설계를 잡아야 5조까지 가는 부분이고, 미래 수요가 뭔지…… 또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많은 공감대가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이원택 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된 탄소중립직불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확대 개편하는 방향에 있어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정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최춘식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차관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도 17~19 제외되는, 제외되는 그런 직불금 대상자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농업에 종사하다가 밖에 나가서 다른 업종에 종사하다 돌아오신 그런 분들이 제외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첫째는 받기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해부터는 받을 수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던 분이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그 이유가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지역에서 듣고 파악한 바로는 사실 그전에는 직불금의 지급액수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소액이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최춘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 가지고 큰 관심 갖지 않고 내가 받지 않겠다 하고 있다가 보니까 17~19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안 된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지역에서 작든 크든 계속 농사를 지어 왔는데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았던 분들에 대한 부분은 좀 검증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차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일단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 보면, 사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직불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됐지만 통계조

사상 잡히는 농지의 면적과 직불금을 받아 가는 면적 사이에는 대략 한 40만ha 정도의 갭이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통계상의 농지면적은 160만ha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직불금을 받아 가는 농지의 합은 한 120만ha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 40만ha의 차이가 왜 발생했나 이게 문제인데 농가들에게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 소액이라서 귀찮아서 신청 안 했다 이런 농가들이 많고 그다음에 몰랐다 이러는 농가들도 많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그 말을 참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최춘식 위원 차관님께서 그걸 검증하실 필요는 아니시고요.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여기 안내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증하면 검증은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역사회, 특히 농촌 쪽에서는 누가 이전하고 이주하는 데 대해 가지고 아주 민감하게 와닿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걸 하면서 속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져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검증절차를 거칠 수 있는 하부조직이 있기 때문에 해서 정말 그렇게 억울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조차도 좀 구제가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민원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걸 감안해 주시고 한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17~19 조건의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위원님, 과거에 몰라서 내지는 소액이라서 신청을 안 했는데 이번에 신청을 하면 대부분의 농가들은 받게 됩니다.

○최춘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는 말씀에서 드렸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다음에 6쪽의 정부 수정의견에 보면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즉 내려오지 않습니까, ‘안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결과를 안내할 수 있다, 공익직불금에 대해 홍보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농식품부장관님뿐만 아니라 지자체장도 포함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이고요. 왜냐하면 지자체가 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특별하게 문제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춘식 위원 한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안내조항이 들어가 있어야 농민들이 바로바로 안내받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리고 46쪽에 청년농업인에 대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직불제도 신설인데, 우리 농촌이 젊어져야 된다는 데 대해 가지고는 그 누구도 이론이나 반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농촌에 젊은 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정착지원사업이 좀 있네요.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정착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는 농촌 인력에 대한 젊은 세대 유입을 위해서 더 힘써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나 강구책은 더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그 사업으로 조금 부족하다 그런 지적들이 많고요. 그래서 단가 문제나 아니면 지급기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청년농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청년농직불제도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 부분을 청년농들에게 현재의 영농정착지원사업보다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가와 지급기한 이 부분을 좀 고치려는 그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최춘식 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최장 3년간 월 1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농지·창업자금 이런 걸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농지…… 창업자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상환 조건 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창업자금은 융자입니다.

○최춘식 위원 융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최춘식 위원 상환 조건, 그러면 그게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지금 창업자금이 5년 거치 15년 상환 정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춘식 위원 그래서 상환기일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농사를 지어 가지고 받은 창업자금에 대해서 상환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현재 쌀 아주 곤욕스럽게 지금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대가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최춘식 위원 이런 걸 다 놓고 볼 때 과연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와 가지고 생활하면서 거기에 대한 소득이 충분히 보전이 되고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되지 않는 한 청년들은 절대 농촌에 머무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옛날 70년대에 젊은 인력들이 무작정 상경했을 때 그 생각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청년 인력을 정말 우리 농촌에 고정시키고 싶고 또 그것이 앞으로 젊은 농촌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지원책은 더 깊이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신정훈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차관님, 기본형직불금, 그러니까 공익형직불금 제도로 바뀌는 전과 후의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신정훈 위원 그러니까 공익형직불금이라고 하는 직불금 형태의 변경 과정에서 변경의 목적, 취지가 뭐였냐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쌀 중심의 직불제를 개편하자 그다음에 대농 중심의 직불제를 개편하자 그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쌀 중심의 직불제를 그래도 모든 품목이 고르게 받을 수 있는, 그다음에 대농보다는……

○신정훈 위원 밭농업을 비롯한 다양한 작목, 쌀 이외의 작목도 다 포함시키자 이런 취지 아니

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 위원 그렇게 보면 그 이전 직불금과 이후의 직불금, 쌀농업을 중심으로 한 직불금에서 전체 농업에 종사하는 다양한 작목과 밭농업까지 다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고 실제로 직불금제도 변경 과정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던 말이에요. 취지가 그렇다면 실제로 17~19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배제될 수 있고 많은 농지가 배제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았었는데 이 문제는 위법이 아니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이해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찌 보면 그건 사각지대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요…… 17만ha, 56만 명이 배제된 이 문제를 사각지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정책 설계라든가 아니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누락·배제 이것 아니었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걸 미필적 고의에 의한 누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정훈 위원 17만ha와 56만 명이 배제된 이 상황을 단지 설계 오류다라고 이야기하기에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불금이 시행된 지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무튼 전체 농지의 대략 40% 정도는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이 문제였는데 그때 당시에 현장의 농업인들이나 농민단체들이 많이 하는 얘기는 그것은 부채지주의 문제가 결부돼 있을 가능성이 많다 내지는 양도세 문제가 결부돼 있을 가능성……

○신정훈 위원 그러면 다른 어떤 형태로든 17~19 자격요건에 들지 않는, 그렇지만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신청할 기회라든가 소명할 기회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그런 문제 제기를, 현장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수정되지 않고 배제된 농민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을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정부측의 과오나 실수가 크다.

이 문제를 지금 윤재갑 위원께서는 소급에 대한 필요성들, 선의의 피해자가 상당 부분 많이 있고 실제로도 그런 사례들을 비일비재하게 우리

가 지금 현장에서 맞이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이 다시 이의 제기하고 소급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절차와 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기본적으로, 아무튼 소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7~19 문제, 17~19라는 부분이 사실은 당초 설계하던 당시에 여러 가지의 그런 불가피함이 있었던 측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어찌 됐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추가적인 노력을 해서 제도개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도개선을 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과거의 의사결정이 위원님 표현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누락이라고까지 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때 저희 나름대로는……

○**신정훈 위원**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와 과정을 설치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소급해서 다시 심사, 자격요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라도, 그런 대상자들이 지금 10년 된 것도 아니고 20년 된 것도 아닌데요. 엇그제 일인데 똑같은 여건, 농업에 종사하고 또 농업의 생산 기능을 다했던 농지 이것이 누락돼 있고 그 문제가 충분히 입증 가능하고 소명 가능한 문제라면 소급을 통해 가지고 해소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글썄요……

○**신정훈 위원** 그것이 행정적으로 전혀 복구하기 어렵다라고 이해한다면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마는 지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라면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소급 적용을 한다면 그 부분은 정책이나 아니면 그것도 일종의 법률관계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안정성 문제도 작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정부가 잘못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피해를 입은 정당하고 선량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런데 저희들의……

○**신정훈 위원** 차관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겠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도 저는 이해하겠고 찬반 의견에 대해서도 이해합니다. 마는 어떤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라고 하는 것이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 이전의 것을 다 소급하자 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마는 이번 기본직불금에 대한 기준은 시행 초기의 상황하고 지금하고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기준도 바뀌지 않았는데 기준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개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기회를 농업인들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정희용 위원님.

○**정희용 위원** 차관님, 이게 저도 늘 궁금했는데 처음에 2017년~2019년 이 옵션을 설정한 이유가 뭔가요? 저도 야당일 때 이것 빨리 바뀌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2017~2019를 설정한 이유, 두 번째는 20~21년도에 계속 부작용이 확인됐는데 아직까지 개정에 나서지 않은 이유 이 두 가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두 번째 것 좀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7~19 설정한 이유……

○**정희용 위원** 17~19 설정한 이유, 두 번째는 2020년 시행하면서부터 문제가 계속 생겼지 않습니까, 2020년~21년? 지금에 와서야 이 개정에 나서는 이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일단 먼저 17~19 기준을 설정한 이유를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불제를 시행한 이후에 실제 농지 면적과 직불금을 받는 면적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어 왔습니다, 논밭 합치면 대략 40만ha 정도. 그런데 그게 뭐 하루 이틀, 1~2년 된 상황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돼 온 거고, 그 40만ha가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조금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일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 직불제를 고민하는 시점에서 많은 의견들은 부채지주의 문제이거나 양도세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하면 많은 수의 경우는…… 그리고 또 농민단체들이나 농업인들이 그때

당시에 직불금팀에 많이 요구를 했던 내용 중의 하나는 진짜 농업인만 직불금을 받게 해 달라, 가짜 농업인이 너무 많다. 그런데 진짜와 가짜라는 단어는 조금은 불명확한 개념이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요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17~19 조건을 넣게 된 결정적인 원인 중의 또 다른 하나는 뭐였나 하면 직불금의 재정 규모를 얼마로 가져갈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습시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대략 한 5년, 그러니까 2014년부터 18년이 정도의 기간 동안에 직불금을 얼마를 지급했느냐 하면 대략 한 1조 7000억 정도를 지급했었습니다. 1조 7000억이 좀 못 되게 지급을 했었는데, 그 직불금의 전체적인 규모를 공익형 직불제를 하면서 얼마로 가져갈 거냐를 정해야 됐었는데 사실은 면적과 직불금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이 직불금의 재정 규모가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을 주로 고려를 해서 그렇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직불금을 그래도 가장 최근에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게 가장 안정성이 높으니까 기준연도로 17~19를 가져가자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20년, 그러니까 제도 도입 초기부터 문제가 됐던 건데 왜 이제야 고쳤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40만ha 중에서 실제 직불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인지를 추정하는 작업이 좀 쉽지 않았던 것이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도 하지만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가 되다 보니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제가 조금만……

○**소위원장 김승남** 신정훈 위원님.

○**신정훈 위원** 지금 차관님 답변 과정에서 제가 예측했던 그런 내용이 나와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40만ha가 지금까지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재정 규모에 대해 특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건 이해를 해요. 또 추정이 쉽지 않았다, 40만

ha에 대한 농업인들 부채지주 등등등 몇 가지 제기되는 문제.

그렇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가 없어야 되는 정도로 타이트하게 짜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걸, 지금 차관 이야기는 여러 가지 추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라든가 재정 규모를 특정해야 될 이유 때문에라든가 그래서 누락될 수 있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논리일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 어려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그 문제가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고 국회에서 바로잡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그때 당시에 입법을 하면서 제도설계가 좀 부족해서 나타난 사각지대 그 피해에 대해서 복구를 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그냥 너무 행정편의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귀책사유가 크다, 이 문제는.

이 사각지대의 문제는 불가피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보완책들을 함께 더 병행 시행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정부의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일단 제도를 만들 때도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고, 어찌 됐든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리고 그 지적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화 작업을 하는 데도 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이 법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까라는 공익직불금 제도 시행 이후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누락된 분들, 농민들의 원성이 그동안에 많았습니다. 그것은 또 헌법 위배 논란도 가져왔고 그랬는데 그동안 정부 측에서 기초자료 등 여러 가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를 쪽 들어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소급 적용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문제—물론 정부의 입장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그다음에 직불제 확대에 있어서 청년직불제 문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최춘식 위원님이 의견 개진해 주신 대상

자에게 알릴 때 지자체장도 포함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정부 측에서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소급 적용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다시 한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계속 같은 말씀을 드려서 송구합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신정훈 위원께서 제기하신 문제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든지, 그러면 그동안의 정책적 어떤 오류·실패 이것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뭘 내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없이 그냥……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런데 어찌 됐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위원님들은 또 현장에 농업인들의 눈높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 17~19 조건을 해제하면서 직불금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차관님, 이게 입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인지 재원상 사실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후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아닙니다.

○**윤준병 위원** 전자의 내용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전자의 성격도 강합니다.

○**윤준병 위원** 전자의 내용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지금 얘기한 게 법적 안정성을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입법을 할 때 소급 적용을 하느냐 여부는 제도가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서 설계했던 내용에 틈새가 많이 있고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고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입법이 되는 경우, 개정이 되는 경우에는 원래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17~19 조건이 예전에 재정상 한계 때문에 사실은 그 내용을 넣은 부분도 있고 부분적으로 이걸 보완하자고 얘기했을 때, 대통령령이나 일부 내용을 넣어 가지고 보완하자고 할 때 농식품부의 일관된 입장은 ‘예전에 5년 동안 이것 손 안 대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불합리성을 다 알고 있지만 손을 못 댁니다’, 이런 게 그동안에 일관되게 농식품부가 답변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식품부도 이게 제도상 허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재정상 제약 때문에 손대기가 어려웠다, 이것 기재부 입장이지요.

농식품부 입장에서 이것 분명히 예전에 형평성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것 지금 재정적으로 허용이 되니 이걸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가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입법적인 내용, 법적인 내용 가지고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그 내용은 예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 우리도 알고 있었다, 대신에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이것 손을 못 댔을 뿐이다. 그러면 그 내용은 입법적 문제가 있었던 점은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입법은 과거 제도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소급 입법하는 게 맞아요, 법례상으로는.

다만 현재 농식품부장관 입장으로서는 이것 소급 입법하면 이 자체에 한해야 하는데 이게 3000억 들어가는데 3000억 들어가는 것 예를 들면 2020년부터 3년 하면 1조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부담이 돼서 못 한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다른 것 예들려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안 맞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소급 적용해 주는 게 맞다, 반성적인 고려이기 때문에. 그 고민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받으려면, 그게 맞다면 여러분들이 기재부 설득도 하셔야지요.

○**소위원장 김승남** 안호영 위원님.

○**안호영 위원** 답변하기 전에 제 말씀도 들어보고 함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소급 적용 문제 관련해서는 잘 다시피 법률을 새로 만들어서 기존의 국민의 권리나 재산에 어떤 침해하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것이 맞지만 만약에 소급 적용을 해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거라면 소급 적용을 하는 것이 헌법적 원리나 그런 부분에 반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사실은 이것을 해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거니까 소급 적용을 하는 데는 어떤 헌법 원리상의 문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다만 여기 정부가 밝힌 입장을 보면 이것을 소급 적용 했을 때 여러 가지 기준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현실성이 낮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농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에 관련된 조항들이 몇 개, 기준·요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 요건들 가운데서 아마 지금 따져 봐도 확인이 가능한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아까 예산 문제, 재정 문제도 물론 당연히 소요되는 문제가 있겠지만 최대한도로 이거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을 하고, 다만 여기 기준이 확인되는 기준·요건들은 있는 거니까…… 과거부터도, 전에 받았던 사람도 어차피 이 기준이 적용된 거니까 기준·요건들을 확인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을 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예산 부담 없이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 의견하고 윤준병 위원님 의견까지 감안해서 한번 좀 말씀을 주시지요.

**○소위원장 김승남** 추가로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농민들이나 농민단체에서 소송을 한 것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한 건 아직 없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저는 아직 그걸 가지고 소송을 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만 확인을 바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승남** 예.

답변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위원님들께서 소급 적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안호영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정부, 그러니까 현재 정부의 제도개선 안이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소급 적용과 관련된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직불제는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수익적 행정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도움을, 급여…… 아무튼 혜택을 주는 그런 행정행위인 거지요.

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누구에게 줄 거냐라는 건 결국은 정책 선택의 문제인 거고 그것을 법률화하는 거고, 그래서 19년도에 직불제 개편을 하면서는 17년에서 19년에 직불금 지급 실적이 있는 사람만 주자라고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그 이후에 제도개선을 했다고 해서 과거의 결정은 무조건 잘못된 거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걸 못 받은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소급 적용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제도개선을 한 상황에서 소급 적용의 문제를, 이 법을 처리하는 데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송이 들어온 것은 없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승남**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이원택 위원** 소급 적용 문제 논란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요. 17~19 조항을 처음에 결정한 배경이나 과정이나 이런 건 저도 들어서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중의 제일 억울한 케이스가 뭐냐 하면 소급 적용을 한다고 할 때 전체 농지를 다 소급 적용 대상으로 할지…… 그 요건이 갖춰진 농지와 농업인의 요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소급 적용 대상에. 그중에 제일 구제가 필요한 것 또 제가 들어 본 사례로 보면 실제로 17년·18년·19년, 그러니까 아까 부채지주라든가 또는 관외, 예를 든다면 취미 차원이 아니라 실제 농민들 중에 작은 면적에 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실제로 17년·18년·19년 농사를 짓고 또 거기서 수확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직불금을 청구하지 않은 농지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 농지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농민들과 농지들 같은 경우는 대단히 좀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구제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을 할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급 적용의 대상이라든가 농지라든가 기준과 요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기준과 요건을 검토하실, 이걸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만약에 반성적 고려로 인해서 구제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 기준과 요건을 구제하는 방향 그런 쪽에 국한한다고 하면, 국한한다는 표현을 하지만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면 또 이걸 충분히 걸러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것도 정부가 한번 고민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소급 적용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또 정책적 결단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오늘 여기서 결론 내기는 좀 힘들 것 같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다른 문제들 좀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어떨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는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윤준병 위원 하나만……

○소위원장 김승남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소농직불금 제도가 지금 120만 원인데 시행령에 위임돼 있잖아요, 지급단가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윤준병 위원 한 150만 원 정도로 수준 좀 올리고 이거를 ‘150만 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가’ 이렇게 입법하면 수용 가능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소농직불금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단가 인상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즉흥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은 기본형직불, 그러니까 소농직불 더하기 면적직불 해서 기본형직불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5년 단위로 직불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정도에 그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은 기본직불과 관련된 부분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형직불은 말 그대로 기본형직불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런저런 이유로 매년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건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윤준병 위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가 문제나 이거는 사실은 민감한 내용이어서 이게 입법 사항이 돼야 된다, 시행령에 그냥 단가까지만 위임해 가지고 알아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위원님, 어찌 됐든 직불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저희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직불금은 사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의 관여를 하지는 않으셨지만 내년에 직불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건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의 의지나 뜻이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면 농식품부도 일단 소농직

불금에 대해서 앞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윤준병 위원 아니,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원택 위원 아니, 5조까지 가려면 기본설계가 있어야 하잖아요.

○윤준병 위원 하여튼 내용은 전향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저희 나름대로는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래서 입법적으로 이걸 지금 시행령이 120만 원이니까 ‘120만 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단가’ 이렇게 규정하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입법 형태만 바꾸는 건데, 지금 대통령령에다 포괄위임해 놓은 지급단가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잖아요. 이걸 입법화하겠다는, 지급단가는. 현재 입법화돼 있는, 120만 원을 유지하면서 입법화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동의할 수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지금 정확한 용어를 ‘120만 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하셨나요?

○윤준병 위원 예.

○이원택 위원 대통령령을 법률로 올려 놓자 이런 거니까.

○윤준병 위원 지금 들어 있는 내용을, 지급단가는 꽤 중요해서 이것을 입법 사항으로 좀 정해야 되겠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런데 사실은 지급단가를 입법 사항으로 하는 게……

○윤준병 위원 아니, 미니멈을 정하는 거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준병 위원 중요한 사항은 입법 사항으로 다 정해요.

그렇게 하는 문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차관님, 아까 53페이지의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안은 공익형직불제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이걸 넣었으면 좋겠다인데 지금

자료로는 반대 입장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또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걸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것 입장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실무적으로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저희는 분명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선택직불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넣을 필요는 없다라고 실무적으로 판단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다른 측면을 고려해서 꼭 법률로 해야겠다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원택 위원** 위원장님, 이것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항·4항·5항·6항·8항·10항·11항·12항·13항·14항까지 이상 11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원택 위원**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하니까 이해를 못 했어요.

○**안호영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소위원장 김승남** 예.

○**안호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법안 중에서 개정안으로 나온 게 여러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항 중에서 위원들 의견과 정부 의견이 크게 이의가 없는 것 그것은 개정하는 걸로 하고 만약에 이의가 있어서 의견이 달라서 오늘 결론이 안 난 것은 보류했다가 추후 심사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해서, 그것을 조금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정희용 위원** 전체를 홀딩하기보다는 된 것만 넘기고 나머지는……

○**안호영 위원** 왜냐하면 급한 게 있고 급하지 않은 게 있으니까.

○**홍문표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승남** 홍문표 위원님.

○**홍문표 위원** 우리가 지금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깊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육십몇 건인데 이 소급이라는 부분이 지나간 것을 다시 한번 되돌려 봐서 새로운 어떤 제도를 만들자는 것

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논쟁을 지금 한 2시간 가까이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저는 위원장님께 앞으로 회의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이렇게 거의 같은 얘기를 되풀이해 가지고 2시간 이상 가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들, 정부가 안을 내놓고 여기서 충돌되지 않고 있는 법은 분명히 식별을 해서 이것은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진행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이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그냥 두루뭉술하게 나와 버리니까 이것을 잘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정부에 지적을 하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지금 소급 입법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견을 들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앞으로 정 이게 안 되면 공청회나 토론회를 한번 열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렇게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정부가 답변을 해 줘야지 이렇게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결정이 안 나오고 또는 지금 대통령령까지 이것 나와 버리면, 대통령령을 여기서 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답변을 지금 정부가 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어려운 것은 어렵다. 그러나 새롭게 지금 나와 있는, 제가 메모를 죽 했는데 한 다섯 가지 정도는 정부가 검토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적극 검토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해서 뭔가 각단지게 매듭이 지어지지 그냥 일문일답으로 결론이 안 나오는 것을 계속 꼬리를 물고 물고 하면 정부가 오늘 위원님들하고 회의하는 데 아무런 소득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주문한 사항들을 검토해서 뭔가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차관께서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의사일정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항 윤재갑 의원님이 입법 발의한 소급 적용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3항 선택적 직불제 문제, 7항의 청년 공익직불금 문제, 9항의 위성곤 의원님이 제기한 심의위원회 관련된 내용 이런 부분들은 계속 계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원택 위원 위성곤 의원안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소위원장 김승남 그러면 9항은 의사일정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예.

○소위원장 김승남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항부터 6항, 8항부터 14항까지 이상 11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7항은 계속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2시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승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와 관련하여 당초 제2항 윤재갑 의원안은 계속 계류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법률안에는 직불금을 소급 적용하는 내용 외에도 17~19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있음을 감안하여 제2항을 포함한 12건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 소급 적용 부분은 농식품부가 다시 검토하고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7건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심사자료 II 권의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 시장격리 요건 충족 시 미곡의 시장격리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모두 7건인데 이 개정안들은 시행령 및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곡의 시장격리 요건을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하고 농식품부장은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에 해당 연도의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원택 의원님 안은 시장격리 요건과 관련해서 초과생산량 3% 기준을 2.5%로, 평년 가격 5% 이상 하락 기준을 4%로 변경하는 시장격리 요건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양곡 시장격리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정부가 의무적으로 미곡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농식품부가 시장격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식량자급 기반을 위한 미곡의 안정적인 확보와 함께 미곡 가격의 급락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로서 개정안 입법 시 최근 국제적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에게 미래 식량자급 기반의 안정적 구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시그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미곡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면 쌀값 급락 방지라는 동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시장격리 미곡의 매입가격 결정 방식 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은 미곡 매입가격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결정된 가격이나 매입 당시 통계청장이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김승남 의원님 안과 윤준병 의원님 안은 양곡수급안정위원회가 미곡의 매입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고, 위성곤 의원님 안은 생산비와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도록 하고, 신정훈 의원님 안은 미곡 가격은 시장가격으로 하되 수확기에 매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미곡을 시장격리 할 때 수확기의 경우 전국 산지 쌀 평균 가격으로, 수확기 이외의 경우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입하고 있는데 공개입찰 방식의 시장격리가 미곡 가격을 하락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개입찰 방식의 시장격리에 따른 미곡 가격의 하락 우려를 해소하려는 취지로서 이와 관련해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공개입찰 방식에 반대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쌀값 하락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 기존의 변동식 불제 폐지에 대한 보완책으로 쌀 가격 하락 시 시장격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바 있는데 공개입찰 방식은 쌀 가격 지지라는 동 법의 개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개입찰 방식에 찬성하는 논거로는 양곡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가격 결정 방식이고 생산 지역·벼 품종에 따라 수확기 벼 가격이 달라 정부가 특정 가격을 정하기 어렵다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매입가격이 시장가격과 다른 경우 정부의 미곡 매입 결정의 실효성이 저하되거나 민간 유통 기능이 저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현행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미곡을 시장가격으로 수확기에 매입하도록 하는 경우 수확기 이외에 미곡 매입이 필요하더라도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생산비와 물가인상률을 미곡의 매입가격에 반영하는 경우 반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양곡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양곡수급안정위원회의 설치 근거 사항 입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양곡수급안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현행 고시에서 법률로 사항 규정하면서 그 위원으로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 5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고, 농식품부에 양곡관리심의위원회 또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위원에 양곡의 생산자 또는 소유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양곡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할 때 양곡 생산자 또는 소유자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현재에도 생산자단체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등을 위촉하여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해당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사항하기보다는 현행처럼 고시에 두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와 식

량안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양곡관리법의 목적으로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생산자의 이익 보호와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를 통한 식량안보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국가가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고, 개정안 입법 시 양곡의 가격 안정을 통하여 생산자인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국제적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는 상황에서 미래 식량자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법의 목적에 생산자 이익 보호뿐 아니라 국민생활 안정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미곡 재배면적 시책 수립·추진 및 논 타작물 재배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 및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선제적으로 쌀 생산량을 조정하여 쌀 가격을 정상화하고, 콩 등 타작물의 식량자급률을 제고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작물별 재배면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미곡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농식품부는 벼 및 타작물 재배면적 관리 시책 수립 및 타작물 재배 시 재정지원 근거 마련은 쌀 수급 균형 및 타작물 자급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지만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경우 타작물 재정지원을 통한 재배면적 조정의 실효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미곡 가격에 대한 차액 보전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미곡의 당해 연도 수확기 가격이 최근 3년 수확기 평균 가격보다 낮은 경우 최근 3년 수확기 평균 가격과 당해 연도 수확기 가격

차액의 100분의 85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도입 시 미곡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지 지정책을 마련하여 미곡의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미곡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개정안의 미곡 차액 보전 제도는 공익직불제법 도입에 따라 폐지된 쌀변동직불제와 유사한바 공익직불제법의 도입 취지, 타 정책 수단 간의 효과성 비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60페이지의 시장격리 요건 충족 시 미곡의 시장격리 의무화 부분입니다.

정부가 지난 20년에 공익직불제로 전환을 하면서 시장 상황과 수급 상황을 고려를 해서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문화한 바 있습니다. 근데 개정안처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시장격리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에는 쌀 공급 과잉 구조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재정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초과생산량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을 하면 결국 쌀 재배 유인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공급 과잉은 점점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혹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생산 조정 사례와 같이 생산단수의 증가나 쌀 소비량 감소 이걸로 인해서 쌀의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논 타작물 재배면적은 계속 늘어나고 그런 악순환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작년 수확기 시장격리 의사결정 시기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쌀값이 급격히 하락했다는 그런 지적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2017년과 같이 선제적으로 수확기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7페이지의 시장격리 미곡의 매입가격 결정 방식 개편입니다.

지금 양곡관리법에서는 시장격리곡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게 된다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비록 농협이 매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격지지 프로그램에 해당하느냐라는 논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요, 가격지지에 해당하게 된다면 AMS가 또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농가의 벼는 정부가 공공비축으로 매입을 하기도 하지만 또 민간 RPC라든지 농협 RPC에서 매입을 하게 되는데 이런 민간 유통망을 통해 거래될 유인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농협이나 민간 RPC 등의 민간 유통 기능을 위축시키는 그런 문제도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사실은 생산자단체 외에도 소비자단체나 관계 부처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이 되는데 결국은 그 의사결정이 아마 상당히 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보통 수확기 대책을 하다 보면 조금 신속하게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는 상황인데 의사결정이 지연된다면 조금 또 다른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 예상됩니다.

현재 정부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입을 하는 건 벼값 조사를 수확기인 9월부터 12월 사이에만 통계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벼값 가격이 없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통계청의 조사와 관련된 부분을 통계청과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경쟁입찰제도를 운영하는 개선방안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가, 72페이지에 현재 정부가 고시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양곡수급위원회를 법률에서 양곡관리심의위원회로 설치할 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윤재갑 의원님과 위성곤 의원님은 그 위원회예다가 의결 기능까지 주자 이렇게 개정안을 내신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고시를 통해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정부에서는 행정부 내의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결 기능을 부여하게 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75쪽의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부분은 방금 수석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라는 부분을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이렇게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77페이지의 미국 재배면적 시책 수립, 그러니까 논 타작물 재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논 타작물 재배사업은 휴경을 포함하는 경우에 세 차례에 걸쳐서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했고 2011년부터 13년까지 했고 그다음에 18년부터 20년까지 했고 그렇게 세 번을 실시를 했었는데,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했던 건 아니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수급 안정 및 타작물 재배지원이라는 이 새로운 규정이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의미하는 거라면 저희들은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략작목 직불을 통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주 단기적으로는 논 타작물 재배사업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경험을 보면 논 타작물 재배사업은 지속성이 떨어지고 일시적으로만 하다 보니 사업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벼로 다 회귀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전략작목 직불 사업으로 하는 게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79페이지의 차액 보전의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은 이걸 사실은 저희 공익직불제를 도입하기 이전의 쌀 소득보전 직불제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사항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공익직불제로 전환을 한 그런 상황에서 다시 쌀 소득보전 직불제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무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유난히 쌀값이 폭락을 해서 많이 걱정이 되시고 농민들이 많이 실의에 빠져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 아픔에 공감을 하면서 이 법을 발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문제의 원인은, 이 쌀값이 폭락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먼저이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작년 추가 격리조치가, 시장격리가 조치가 늦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 같고.

그때 그러면 격리가 왜 늦었느냐? 쌀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격리를 좀 늦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떨어지니까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직면하게 됐는데 그럼 예측의 실패……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시장격리를 해야 된다,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걸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 아니냐 저는 이런 비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차관님. 진작에 조치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걱정까지 안 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오전에 기재위에서 민주당 서영교 위원님께서 추경호 부총리님한테 질문을 했나 봐요, 쌀값 대책에 대해서. 추경호 부총리께서 ‘시장격리가 필요한지, 물량은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 또 별도의 수급 안정 조치는 없는지 해서 이달 말에 발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우리 처음 듣잖아요, 농해수위 소속 위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실제 농식품부에서 해당 조치를 준비하는 게 있는지, 부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달 말에 발표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 계획으로 충분한지 크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일단 지금 왜 이렇게 쌀값이 떨어졌나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는 하겠지만 쌀시장에 있는 직접적인 원인을 찾으면 크게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2020년도에 대개 흉작이 들었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 가격이 무척 올랐었습니다. 당시에 쌀이 부족해서 그때 저희가 민간 시장에 공매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 쌀의 상승세가 워낙

강해서…… 대략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양은 한 10만t 정도, 수급상의 수치는 10만t 정도인데 시장의 매수세가 워낙 강해서 지속적으로 쌀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때 한 30만t 정도 공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 20만t 정도가 추가 공급이 됐던 게, 이제 21년산 같은 경우에 대풍이 들면서 더욱 시장에 많은 물량이 깔려 있었던 거지요.

20년산은 많이 공매했고 21년산은 대풍이 들었고 그다음에 21년산의 가격 또한 수확기에 22만원, 그러니까 10월 5일 자 가격이 거의 22만원 정도였기 때문에, 지난해 21년산 같은 경우에 27만t이 남는다 그 정도로 생산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가격이 22만원 정도까지 올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시장격리를 수확기에 하기는 어렵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수확기 이후에 격리를 한 거지요.

○정희용 위원 의도적으로 안 한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세 가지 원인, 그러니까 20년산 공매를 많이 했고 21년산 대풍이 들었고 21년산에 대한 격리가 조금 늦어졌고 이 세 가지가 현재 쌀값 하락의 주된 원인이라고 봅니다.

○정희용 위원 예측을 미리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기본적으로 얼마가 남느냐라는 거는 사실은 생산 통계나 소비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저희들은 인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 통계보다도 자기들의 주관적인 감 이런 것들을 믿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보니 사실은 27만t이 남는, 어떻게 보면 풍년이 들었는데도 쌀값이 22만원까지 오르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그 상황에서 또 시장격리를 하겠다고까지 하기는 쉽지 않았었습니다, 상황 자체가. 어찌 됐든 그렇게 세 가지 원인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올해 수확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7년도와 같은 수확기 대책을 준비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017년의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당시 2017년 6월 달에 쌀값이 한 12만 6000원 정도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수확기에는, 9월 28일 날 저희들이 수확기 대책을 발표했는데 시장에서 남을 것

으로 예상되는 물량보다 많은 물량을 격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대책을 발표했고 시장에서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보다 플러스알파의 물량을 격리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수확기 대책도 2017년도의 대책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관계 부처와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정희용 위원 2017년도에는 예측을 해서 잘했는데 2021년도에는 그걸 못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2017년도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쌀값이 12만 6000원까지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12만 6000원까지 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확기 대책을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분명히 12만 6000원이라는 쌀값은 너무 낮기 때문에 농가들의 소득 안정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조금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수확기 대책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때와 비교하면 현재의 쌀값은 그때보다 높기는 하지만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아니면 농가들의 기대나 요청 이런 부분들은 또 그때처럼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그에 맞게 대책을 준비하려 합니다.

○정희용 위원 단기적으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거 농민분들이 수용하시기 쉽지 않을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아무튼 2017년도에 준하는 그런 대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이원택 위원님.

○이원택 위원 차관님, 고충이나 상황이나 이런 건 공감하는 바도 있는데요.

사실 쌀소득직불제(고정·변동)에서 공익형직불제로 전환됐잖아요. 전환되면서 쌀농업 같은 경우 직불금이 확대됐는데 이렇게 전환될 당시에 논농사 하시는 분들요, 쌀농사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갔을 때 쌀농업은 나중에 쌀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변동직불제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값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양곡관리법상 자동시장격리제라는 것을 도입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를 도입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정확하게는 현재의 제도를 자동시장격리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장격리제를 도입한 건데 도입할 때 취지가 사실 농민들의 쌀값 안정화를 도모해 주겠다는 취지로 입법이 된 겁니다. 그러나 법 조항 성안될 때 의무조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된 거지요.

또 재량 범위에서 농식품부가 농민의 입장에서 아마 이걸 운영해 줄 거다라고 하는 신뢰 또 이걸 믿어 달라, 믿어 주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고요. 또 그런 언론도 제가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의 첫 사례입니다, 이게 지금. 양곡관리법 도입 개정되고 첫 사례인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첫 사례에서 문재인 정부도 실패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도 지금 초기에 들어 있는데 잘못하면 큰 실패로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도 저는 늦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느냐 또 정부가 자율적 권한을 가지고 제때 정확하게 예를 든다면 가려운 곳을 긁어서 작동시켜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신뢰가 저는 깨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깨졌다.

그건 뭐냐 하면 농식품부 입장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물가 관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아까 20년산 공매를 계속했고 물량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년산 공매를 하고 대풍이 들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제가 21년 국정감사 때도 이거 조기에 선제 격리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던 당사자 중의 한 명인데 그때 당시에는 쌀값이 21만 원, 22만 원대니까 여유가 있다고 판단을…… 오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생각해 보면 오판이고 잘못된 판단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첫 사례가 이 기재가 작동이 안 됐고 결국은 21만 원대에서 지금 16만 원대로 하락을 한 상황이 왔다는 거지요. 이거에 대한 평가를 볼 때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제가 볼 때.

두 번째, 이 운영 능력을 확실하게 농식품부가

주도해서 하고 있느냐, 기재부가 운영 능력을 주도하고 있느냐? 저희가 볼 때는 기재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재부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미 신뢰가 깨졌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해 봅니다.

평가를 해 보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양곡관리법 16조의 그 조항이 사실은 쌀값을 적정한 수준에서 안정화를 취하자는 취지가 목표인데 그 효능감이, 재량 범위에 있는 이 제도가 효능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효능이 없잖아요.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을 과잉 공급이 많이 됐으니까 그런다 이렇게 치고 갈 것이 아니고, 그 과잉 공급은 3년 전에도 있었고요. 그런 여건들은 다 있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아까 변동식불제에서 공익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쌀전업농들, 쌀농사 하시는 분들한테 안정감을 주고 또 쌀값 가격을 지지해 주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 취지에 맞게 정부가 운용하지 않았다.

또 그런 작동 능력이 농식품부에 있지 않다, 기재부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과가 효능감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해서 작동시킬 거냐? 이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농식품부가 9월 말에 선제적 격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선의적인 차원에서 일회성으로 갈 수는 있지만 이 정부 내내 일관된 어떤 시스템이 작동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측면에서 의무화를, 농식품부도 이걸 저는 적극 고민해야 된다.

이 자리에서는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농식품부장관님이나 차관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들은 사실 마음속에서는 이것 동의를 해 줘야 맞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또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의무화를 해야 제대로 작동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위원장 김승남** 차관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원택 위원 제가 얘기가 길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아닙니다.

정부의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가 의도를 했던 것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객관적으로 살펴보다라도 짧은 기간에 너무 급격하게 쌀값이 하락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정부의 수급관리 정책에 대한 신뢰성 문제 부분은 지난 1년을 한 번 저희들이 되돌아보면서 조금 더 정책을 세밀하게 가다듬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장격리를 의무화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여지, 그러니까 그럴 측면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나 하면 저희들이 쌀과 관련해서 수급 균형을 회복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실질적인 수단은 세 가지입니다. 시장 기능에 의해서 하든 아니면 논 타작물 재배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재배면적을 조절하든 아니면 생긴 재고를 사료용으로 공급을 하든 가공용으로 공급을 하든 소비를 촉진하든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자동 격리를 의무화하게 된다면 첫 번째 수급 균형을 회복하는 수단은 사실상 포기하는거나 다름없게 됩니다.

쌀이라는 품목이 우리 농업에서의 중요성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수급 기능 내지는 정부의, 시장 기능에 따른 수급 조절 기능 내지는 정부의 수급 조절 기능을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져가는 게 맞냐? 저는 그건 분명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앞으로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자동시장격리 내지는 시장격리를 수확기에 의무화하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택 위원 차관님, 제가 취지는 잘 알아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이원택 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야 되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이원택 위원 예, 잠깐 이것만 할게요.

정부가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18·19·20년 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이원택 위원 그리고 기존에 한 두 번 더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겁니다. 논 타작물 재배사업이라고 불러야 할지 전략작물이라고 불러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일관되게 정부가 끌고 갈 수 있느냐, 사실 그것은 கே스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맞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수급 조절을 하겠다는 겁니까?

정부의 수급 조절 능력 자체가 논 타작물 재배면적을 일관되게 10년·20년 키워 간다면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렇기 때문에 시장 기능에 의한 수급 균형 회복 내지는 수급 조절 기능을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원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것을 내가 보니까 대개 5~6년 주기로 했더라고요. 논 타작물 한 번 했다가 5~6년 쉬었다가 또 논 타작물 했다가…… 보니까 5~6년 주기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식의 패턴으로는 수급 조절 진행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은 시장의 부침에 따라서 또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뻔히 예견되는 것이다. 그걸 농식품부가 수급 조절 기능이다 또 시장의 자율성에 따른 수급 조절 기능을 통해서 그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조금 반대 의견입니다. 이것은 착각일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략작물 비슷하게 해서 700억 정도 예산을 세워 났는데 쌀과 관련해서 논 타작물 재배를 통해서 생산면적 조절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약해 보인다고 저는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돼서는 계속 시장이 교란되겠구나, 결국은 이것을 의무화해 놓지 않으면 농민들만 계속 힘들어지겠구나 이 판단입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다음은 신정훈 위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지금 차관님이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2020년도, 2021년도—작년도—쌀 생산량과 가격 이 문제를 하시면서 단경기에 10만t이 필요했

는데 30만t을 시장이 워낙 땅겨서 그냥 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때는 가격의 상승세가 워낙 강력했습니다.

○**신정훈 위원** 저는 그때 많은 농민들이 소위 말해 출하기 직전에 공매곡을 방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걸 기억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것은 쌀값을 수확기에 떨어치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가 있다 그랬는데……

10만t이 필요했는데 30만t을 공매를 했다, 그래 놓고 쌀값이 유지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전혀 어불성설이지요.

두 번째요, 그러면 2000년도…… 지금 남은 쌀 이야기입니다. 2021년도에 대풍이 들어서 쌀값이 떨어졌다. 이 두 가지 원인을 든단 말이지요. 2021년도 대풍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2018년도부터 20년까지 계속돼 왔던 타작물 재배를 중단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생산면적이 늘었고 대풍이 들었고 그래서 쌀이 과잉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정기에 쌀을 푼 것과 타작물 예산을 없앤 것과 그 이후에 과잉이라고 수많은 의회에서 또 국민들이 현장에서 아우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격리를 늦추고 늦추고 늦춰 가지고 쌀값이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또 최저가로 낙찰했지 않습니까.

저는 쌀값의 폭락 과정을 보면 정부가 굉장히 내부에 무슨 의도가 있었어요. 아까 정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가 일부러 의도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아니에요?

이 과정을 보면 정부는 쌀값을 낮추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에서 필요한 양이 10만t이면 10만t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높으니까 20만t 더 풀었다는 거고, 실제로 그 해에는 이미 타작물 재배 예산을 없애 가지고 생산면적을 늘려서 쌀이 구조적으로 공급이 과잉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시장입니까?

차관이 이야기 중에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데 이게 지금 시장이냐고요.

시장에서 필요한 양은 10만t인데 30만t 풀었고 또 구조적 공급과잉이라고 하면서 타작물 재배는 줄여 버렸고 그리고 쌀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계

속 최저가로 입찰을, 돈은 들어 가면서 아무 효과 없는 정책을 편 것은 결국 쌀시장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시장한테 또 맡기자고 그래요.

선의로 쌀값을 보호하기 위한, 가격을 안정하기 위한 시장격리 제도라든가 생산 조정 제도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유를 대면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먼저 앞에 묻겠습니다. 지금 추가 공급 30만t 그리고 타작물 재배 없앤 것 그리고 농장 시장격리 이런 모든 것이 정부가 시장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의도적인 쌀값 폭락이라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기본적으로 쌀이라는 품목의 특성상 정부가 다른 품목에 비해서 시장 개입을 많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시장을 좌지우지할 생각을 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경우는 사실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쌀값이 12만 6000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기능을 운운하면서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그럴 수는 없는 거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예외적으로 시장 기능이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시장이 거의 붕괴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 정부는 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지나친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차원에서만 정부는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일련의 상황도 시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관리 차원에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지 정부가 의도를 가지고 떨어뜨리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신정훈 위원** 그러면 차관님, 아까 정희용 위원님 말씀 중에 답변할 때는 정부가 실수했다 아니면 좀 잘못 생각했다 이런 표현을 담아서 말씀하셨는데……

소위 말해서 쌀값이 이렇게 결과가 오는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10만t 필요했는데 30만t 풀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듯이 21년에 대풍이 들어서

쌀값이 떨어진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그해에는 타작물 재배 예산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없앴단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과잉을 더 악화시킨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의도적으로 없앴던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그게 3개년만 하게 됐던 것이지 않습니까.

○**신정훈 위원** 내가 이야기하고 답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신정훈 위원** 쌀값이 하락세로 들어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장격리를 요청하는 국회라든가 현장의 요구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쌀값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쌀값을 낮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것은 그냥 시장 기능에 의해서 쌀값이 폭락한 것이 아니라 일련의 정부의 정책 과정이 계속적으로…… 필요량 이상으로 푼 것이나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타작물 재배를 중단한 것이나 남아돌아서 가격 하락으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격리를 늦추고 늦춘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정부의 의도인데, 제가 생각할 때 불행하게도 이것은 농림부의 의도가 아니라 물가 당국의 의도에 의해서 짜여진 각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나중에 하세요.

이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장격리가 높은 쌀값을 기도해서 공급과잉을 심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은 시장격리가 일반화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시장격리는 일시적인 상황이 어야지요.

올해 쌀이 38만t 증수됐는데 그 원인이 뭔지 아시는데요? 아니, 작년도 쌀이 증수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어쨌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신정훈 위원** 2020년도에는 350만t이 생산됐는데 2021년도에는 388만t으로 38만t이 증수됐단 말이에요. 원인이 뭐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정상적으로 생산이 낮았던 해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평년보다도 생산이 많았던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차이가 생기는데……

○**신정훈 위원** 원인이 뭐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일단 재배면적도 줄지 않았고 그다음에 생산단수도 평년 단수가

520인데 지난해는 530이었던 말입니다.

○**신정훈 위원** 생산단수에 의해서 증수된, 이 전체 38만t은 생산단수가 높아져서 거의 대부분 다 증수된 거예요. 생산면적은 1% 미만 늘었고 생산단수는 10% 가까이 증수됐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생산면적의 증가도 타작물 재배를 없앴던 이유 때문에 더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작년과 같은 이런 일시적 과잉, 소위 말해서 증수에 의한 과잉은 시장에 개입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38만t이 늘어났는데 가격은 20% 이상 폭락해 버리면 풍년이 원수라는 이야기라니까요. 10%가 증수됐는데 가격은 21% 폭락해 버리면 풍년의 효과는 오히려 농민들에게 소득 감소로 이어진단니까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에 있어서 시장 개입을 통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지켜주는 것은 농림부의 당연한 의무라고요.

저는 이 일시적 과잉에 대한 소위 말해서 시장격리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법제화하려고 하는 시장격리 의무화는 그런 일시적 과잉에 대한 대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지 해년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다가 이런 경우에 한 번씩 써야 돼요.

그러면 해년마다 평년작을 기준으로 해서 수급과 균형을 맞추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생산면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림부 자료에 보면 구조적 과잉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평년작이라 할지라도 20만t씩이 과잉이다, 이거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대략 맞습니다.

○**신정훈 위원** 농림부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평년작이라 할지라도 20만t이 매년 과잉이라면 이 과잉 구조를 없애 주는 것이 저는 수급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 생산 조정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생산 조정을 통해서 균형을 맞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황에 의해서 과잉이 되는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 의무화를 통해서 그걸 도려내고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차관 말씀대로 2010년도 때 한 번 생산 조정을 했어요. 그때 보세요. 시장격리 한 번도 안 했어요. 무난히 넘어갔어요.

저도 이 그래프를 이해 못 했는데, 오늘 차관 이야기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2010년도부터 2014년도에 이르기까지는 수급의 균형이 있었던 말이에요. 그때 생산 조정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2018년도부터 20년까지 또 수급의 균형이 맞춰졌어요, 생산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소위 말해서 시장격리 할 필요가 없었던 말이에요. 올해같이 7000억, 8000억을 시장격리 예산으로 낭비하지 않아도 됐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신정훈 위원 저희들은 이런 상황을 요구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지 뭐 예산 낭비……

농림부 자료를 보면 기가 막혀요, 이 답변을 보면. 어찌 우리 주장과 정반대로 이렇게 답변을 만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어요. 국민학생이라도 현재의 지표하고 이 농림부의 답변을 보면 이거 께변이에요.

시장격리를 하게 되면 이 사이클이 맞습니까? ‘시장격리 의무화는 높은 쌀값을 기대하고 재배의향을 증가시켜서 공급의 과잉을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생산 조정은 궁극적으로 식량자급률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오히려 생산 조정을 통해서 타작물 재배를 하니까 콩의 자급률이 높아졌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좀 말씀을 드려도……

○신정훈 위원 쌀의 균형은 맞춰지고 콩의 자급률 등 일반 식량작물들의 자급률은 높아졌단 말이에요.

정부의 모든 자료를 보면 생산 조정을 기본으로 해서 쌀시장에 수급의 균형을 맞춰 내고 작황 등 일시적인 과잉공급에 있어서는 시장 개입, 시장격리 의무화를 통해서 해결하면 정부가 올해 8000억 가까이 쓴 예산의 10분의 1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이 법안이 그렇게 합리적인 법안으로 지금 여야 위원들이 다 같이 주장하고 있고 오늘은 전라남도지사, 경북지사까지 다 나서서 이 쌀값 문제를 해결하자고 아우성인데 왜 유독 농림부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김승남 짧게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일단 지금 먼저 논 타작물 재배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논 타

작물 재배사업이 수급 균형 효과가 없다, 그다음에 시장격리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언제나 수급 균형에 방해가 된다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현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개정안의 내용은 그냥 시장격리가 아니라 자동시장격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신정훈 위원 차관, 그 이야기는 지금 여러 번 답변에 포함돼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 자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동시장격리가 매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자동시장격리는 없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없도록 정책을 펼치자는 것이 이 법안의 내용인데, 굳이 지금 자동시장격리 의무화를 우리가 매년 권장해서 매년 상시적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저희는 실제 시장격리를 매년 한다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자동시장격리라는 제도는 그게 작동을 하든 안 하든 농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쌀을 안 심을 이유가 없게 만드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신정훈 위원 위원장님, 죄송스러운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농림부차관께서 계속 께변을 내비치는데요.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생산면적이 어떻게 준지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신정훈 위원 지금 올해 쌀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작년도 모내기 시절 때 쌀 가격이 가장 높은 시절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쌀 면적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올해 쌀 면적이 대략 한 5000ha 정도 줄었습니다.

○신정훈 위원 줄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신정훈 위원 지금 차관님 주장대로라면 쌀값이 떨어지면 생산면적이 줄고 쌀값이 오르면 생산면적이 늘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통계 그래프를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쌀값이 오른다고 생산면적이 늘어난 경우는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다 줄었던 말이에요. 2015년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줄고 있던 말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위원님, 그……

○**신정훈 위원** 더더군다나 가장 높았던 21만원·22만원 쌀 가격이 보장되는 그 시점에, 올해 쌀이 5000ha가 줄었던 말이에요. 쌀 가격이 올라가면 무조건 기대심리가 부응해서 쌀 면적이 늘어날 거다 이 가설은 틀린 이야기란 말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아닙니다. 그런 뜻……

위원님, 정확하게 드려야 되는 말씀이 뭐냐 하면 현재 상태에서 벼 재배면적이 늘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01년 이후로 벼 재배면적은 딱 한 번 늘었습니다, 지난해에. 그런데 기본적인……

○**신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반론의 논거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생산 조정을 하든 시장격리를 하든 그렇게 되면 농민들의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더 많이 재배를 해서 이 쌀값의 악순환 구조가 계속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농림부의 그 논거가 틀렸단 말이에요.

쌀의 재배면적은 농지법에 의해서 강제되고 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사유로 점차 점차 줄고 있어요. 이 추세가 가격에 의해서 영향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소위원장 김승남** 아니, 중복된 이야기인 것 같으니까요.

○**신정훈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박덕흠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야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위원님.

○**박덕흠 위원** 그러기 전에 우선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대체토론·검토의견을 보면 ‘식량자급 기반의 안정적 구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시그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렇게 해서 입법했을 때 긍정적으로 보신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예, 입법했을 경우에는 농업인들에게 그런 시그널을, 정부의 의지를……

○**박덕흠 위원** 그전에는 법안이 이런 이야기가 없었나요, 농해수위에서?

언제부터 오셨지요, 수석님은?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제가 수석전문위원은 한 2년 전부터 했고요. 한 2년 동안 하다가, 올해 여름에 다시 왔는데……

○**박덕흠 위원** 그전에도 이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나요?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이걸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박덕흠 위원** 아니, 법안보다도 그런 토의가, 회의 중에 그런 게 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법안은 아닌데 위원님들께서 ‘조기에 좀 정리하라’ 이런 건 많이 있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됐을 때 수석전문위원실에서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렇게 낸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예산 문제하고 연계는 안 했습니다.

○**박덕흠 위원** 적어도 예산을 참고하셔야지, 예산을 생각 안 하면 되나?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을 생각하면 결국은 그런 쪽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많이 토의를 해야만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입법, 수석실에서 이런 부분도 검토가 돼서 여기다가 그런 문제도 짚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차관님, 최근의 쌀값 폭락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저도 농림부에서 쌀값에 대해서 사실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안 되면 계획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쌀값은……

사실 쌀값에 제일 예민한 분들이 누구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농민들이 아무래도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리고 서민들이예요, 서민들.

쉽게 얘기해서 쌀로 생계를 이어 가시는 농민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서민들이 쌀값이 올라가면 제일 타격을 받지요? 안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보통 저희들 사무실에 쌀값이 많이 떨어지면 농민들이 전화를 많이 주시고요, 전에 저 과장 때, 국장 때 보면. 쌀값이 많이 올라서 한 20만 원이 넘기 시작하면 김밥집이나 아니면 영세식당 이런 데서 또 전화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박덕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쌀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정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산 쌀에 대한 시장격

리 계획을 지난해 연말에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박덕흠 위원 그런데 실제 시장격리는 2월과 5월에 추진했고,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박덕흠 위원 또 그마저도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물량을 정해서, 시장격리 이후에도 쌀값 하락세가 이렇게 지속됐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박덕흠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이런 쌀값 문제가 매년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쌀값이 떨어지면 문제 또 올라가도 문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보면 정부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대책이. 뭔가 하나의 안정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전략작물직불제 이것도 그대로 시행을 했다 하면 그래도 효과가 좀 더 있었지 않나……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 쌀값이, 쌀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하니까 그걸 또 중지를 해 버리고. 뭔가 방향을 갖다가 정부에서 잘못 잡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일단 수급 조절과 관련된 문제가 대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그 농산물의 특성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가 조금 더 세밀한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추곡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덕흠 위원 어쨌든 차관님도 차관 되기 전까지 농림부에 계속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박덕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농민들 또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탈피할 수 있도록 이제는 확실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래서 통계청에서 쌀 생산량 통계가 언제 나오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쌀 생산량, 통계청 것은 한 11월 중순 정도 돼야 나옵니다.

○박덕흠 위원 11월 중순 때 나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수확기 대책을 할 때는, 농진청에서 9월 15일을 기준으로 작황 조사를 합니다. 일단 그걸 가지고 수확기 대책을 수립해서 공표를 하고 그리고 11월 중순에 통계청의 생산량 통계가 발표되면 보완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다시 보완을 하곤 합니다.

○박덕흠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는 어찌 됐든 9월 15일 또 11월 달 나온 것을 보고 대책을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시장격리 요건 이 부분을 의무화하는 부분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를 이번에는,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대책이 꼭 만들어지도록 차관님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걸 만드세요. 이게 매번 반복되는 그런 쪽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런 단계를 지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동시장격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쌀에 관한 수급 조절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확실한 대책이라면 사실은 정부가 반대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20년도, 그때 19년도에 공익형직불제로 바꾸면서 당시에 농민단체들이 여러 번 강하게 요청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농민단체랑 같이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했던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에는 정부가 쌀에 대한 수급 관리 기능을 강화라면 더 강화를 해서 쌀값이 과거보다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을 의무화까지 하는 건 지나치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원장 김승남 알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홍문표 위원님.

○**윤준병 위원** 차관님, 일단 2020년도에 쌀 변동직불제에서 수급안정제로 바꿀 때 그때는 쌀 변동직불제의 취지가 수급안정제 체제에서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지요, 실제 가격과 관련된 내용은? 그러지 않았겠어요? 일단 그건 전제가 됐었겠지요.

그러면 농민들이 그때 변동직불제를 수급안정제로 바꾸면서 기대했던 내용들 이게 지금 금년도, 작년부터 금년의 과정 속에서 쌀값이 25% 내려가는 과정을 보면 당초 취지와 완전 배치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농민들이 기대하는 신뢰, 국민들이 바라봤던 신뢰 이걸 꽤 깨졌겠다. 이건 동의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아니, 어찌 됐든 저희들 입장에서……

○**윤준병 위원** 아니, 뭐 입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지금 농민들의 요구나 농민들의 그런 생각들을 저희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수확기에 선제적으로 과감한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윤준병 위원** 그것은 이후 문제고.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신뢰가 꽤 떨어졌겠다, 여기에는 동의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글썄, 그게……

○**윤준병 위원** 그런데 시장격리와 관련해서 자율 기능에다가 재량적으로 맡겨 놔더니 해야 될 요건에 부합했는데도 안 했어요, 결과적으로 실기하고.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보면 3% 이상 돼서 급락할 우려가 있거나 하면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급락해도 적기에 제대로 안 해 가지고 금년도에 25%가 폭락한 거지 않습니까? 이 이유는 정부가 제도를 재량적으로 만들어 놔더니 그 내용조차도 안 지키더라. 그러니 의무화를 해야지요, 그러면.

다만 지금 농식품부에서 걱정하고 있는 내용이 과잉 생산에다가 이게 고가로 유지되면 오히려 정부의 재정 손실만 야기하는 것 아니냐 또 그것을 고착화시킬 수도 있다 이 우려잖아요. 그런데 의무화를 해도 발동 조건에 과잉 생산하고 폭락이 우려되거나 폭락될 때 또 가격이 5% 이상 되고 더 되려고 하는 상황일 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게 가격이 높아질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

게 되면 고착화된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나는 그것…… 하여튼 전제의 내용은 현재의 조건이 과잉 생산했는데—가격이 유지되면 발동 요건도 아니에요—가격이 폭락될 게 우려되거나 폭락이 됐을 때에 발동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게 수급안정제로 유지되려면 그것을 통해서 시장 기능이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 기능이 정부에서 해태해 가지고 제 기능이 발휘 안 돼요. 그러면 재배면적이나 사료용 등 소비 촉진을 시키려면 오히려 의무화가 돼야 정부가 더 열심히 하지요. 다른 영역들을 더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의무화를 해야 된다, 법제화를 해야 된다.

더더군다나 지금 가격 폭락이 가속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매입하는 것, 거꾸로 가격 폭락이 더 가속화된다고 역공매 방식 유지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조금 전에 신정훈 위원님이 주신 말씀 중에도 그런……

○**윤준병 위원** 잠깐만요, 내가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아니, 제가 좀 여쭙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얘기해 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러니까 두 분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대략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건 자동시장격리제라기보다는 일정한 엄격한 상황에서 진짜 정부가 개입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조건으로 놓고 그때는 의무적으로 들어가라, 이게 보통 일상……

○**윤준병 위원** 지금 입법안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아니요, 지금의 내용은 사실 그렇게 보기에 어려운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내용을 문구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입법안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아니, 입법안을 모르는 게 아니라……

○**윤준병 위원** 아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규정된 그런 조건은 사실상 자동시장격리제에 가까운 모습이고 그것은 농가들 입장에서는 쌀을 다시 심어라라고 권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윤준병 위원** 그것은 차관이 오해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내용 보면 일정한 발동 요건이 명시돼 있고, 명시돼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러니까 그 요건의 정도가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내용 가지고 이것은 이런 내용으로 담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셔야지, 원초적으로 시장격리 의무제가 돼야 되는데 발동 요건상 우리가 우려하는 내용이 이런 표현은 좀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내용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분명히 고가를 고착화시키지 않도록 조건이 부여돼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고착화된다고 자꾸 우겨 대면 되겠냐고요.

답변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의 조건이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매우 일반적인 상황이나, 그것이 어느 정도 농가들에게 제도적 장치로서 인식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현재 규정이 돼 있는 것들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윤준병 위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그 내용에 대한 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장 개입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현재 상황을 만들어 놓고 불신을 만들었으면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뒷받침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윤준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문표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표 위원** 차관, 수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오늘 기재부 쪽이나 기재부장관이…… 오늘 우리 법안소위하는데 기재부하고 통화한 일이 있어요, 이 쌀값 문제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없습니다. 아니,

오늘 중에 제가 기재부와 통화를 한 것은 없고요.

○**홍문표 위원** 왜 그것을 내가 묻느냐 하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재부장관께서 쌀값 문제 9월 말경에 발표하겠다고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홍문표 위원** 그것을 농림부가 알아야 되고 농림부가 그 기본적인 스탠스를 지켜 줘야, 기재부가 나중에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농사는 농림부가 짓는데 가격은 자기들이 결정을 하나? 이것 참 자존심 상하는 거고, 이렇게 농정이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주무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렇습니다.

○**홍문표 위원** 그러면 기재부는 여러분들 얘기 들어서 발표를 해야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홍문표 위원** 자기들 멋대로 발표해 놓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아니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홍문표 위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 발표를 지금 차관은 모르고 있는데 그러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아니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저희들이……

○**홍문표 위원** 얘기 들어 봐요. 그런 식으로 국가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잘못됐다면 이것을 고쳐야 돼.

농촌 농민이 분개하는 게 이거예요, 농사는 농민이 짓고 주무관청은 농림부인데 엉뚱한 데서 쥐고 가격 결정해 놓고 따라라. 이런 방식으로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과거 정부가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얘기 듣고 내가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고. 이것 윤석열 정부에서는 고쳐야 됩니다, 과거 정부가 이런 식으로 했다 하더라도.

지금 차관께서는 과거 정부, 지금 정부 같이 농림부에 계시잖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홍문표 위원** 이 잘못된 것 고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알겠습니다.

○**홍문표 위원** 과거 하던 거니까 내가 한다. 그렇게 안 됩니다, 이제.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지금 갑론을박하는 것은 이것 문제인 정부가 실패한 정책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5월 달에 이것 인수

받아 가지고 앞으로 농정정책 우리가 지켜볼 텐데 지금 우리 감론을박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답습해서 되겠어요? 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실패한 과거 정부의 정책을 더 이상 우리가 논쟁하는 것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앞으로 쌀이, 우리가 현재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지금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올 양곡연도 말 기준으로 저희 재고한 114만t 정도 될 겁니다.

○**홍문표 위원** 아니, 현재 재고가, 우리 창고에 있는 것 지난번에 농협에서 조사한 게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때 7월 말 기준으로 40만t이었던……

○**홍문표 위원** 40만t에서 지난번에 격리해서 좀 줄었을 텐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게 10월 말에는 한 10만t 정도로 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문표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문제는 그것 아니에요.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것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다음에 신곡이 지금 이미 나와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새로 나오는 것 어떻게 할 거냐……

○**홍문표 위원** 그러면 이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홍문표 위원** 그러면 이 재고와 신곡이 나오면 지금 쌀값이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야. 이것을 정부가 보고 앉아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게 농민들이 걱정하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 서울역 앞이나 또, 서울역 앞에서 두 번씩 규탄대회를 하고 쌀값 문제 갖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홍문표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워놓는 것이 나는 가장 시급한 답이에요. 거기에 이제 중장기가 있다고 본다고, 당장 해야 할 일이 있고 중장기로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나는, 농림부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와 다르려면 중장기 정책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 해 주셔야 된다고.

단기 문제는 지금 쌀값 문제, 재고 있는 것 또 신곡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 이것 얘기를 딱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격리 문제 같은 것 이런 것은 중장기로 해야 할 문제거든요. 그런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논쟁이 지루하면서도 결론이 안 나와서 제가 중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차관계서도 오랫동안 농정정책을 하셨기 때문에 들으셨겠지만 농민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뭐냐? ‘쌀값 올리면 식품 가격이 올라간다’ 이 소리를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농민들은.

내용을 들어가 보면 1년에 쌀농사 짓는 농자재 가격이 식품비보다 더 비싸요. 그 통계를 내가 시간이 없어 얘기를 했는데 그것 18가지를 통계가 갖고 있어. 식품비가 더 싸요, 농사 짓는 비용이 더 비싸고. 그래서 농민들이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쌀값 올리면 식품비가 올라가? 이따위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농민들이 더 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이 근본적인 문제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테니까, 여기 농림부 산하에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 보세요, 맨날 똑같은 얘기 날짜만 변경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홍문표 위원** 그런데 쌀이라는 문제는 우선 국민이 소비를 안 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첫째 원인이지? 과잉 생산이 돼서 쌀이 남아 돌아갑니까? 소비를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것 쉽지 않아요. 국민의 식생활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바뀌집니까? 그래서 타작물 재배 같은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차관 얘기 들으니까,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타작물 재배가 현상에서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가면 다시 쌀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언급하셨거든. 그것은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단기적으로 할 때와 장기적으로 지속할 때 어떤 경우든 문제는 있는데 어떤 식의, 그러니까 문제의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홍문표 위원** 그래서 쌀농사를 지으면 국가 국민, 큰 국가 정책의 문제가 있고 타작물 재배를 하는 것은 각론에 들어가서 정책을 잘 세우면 돼요.

쌀농사 짓는 것보다 타작물 농사 짓는 게 농민이 더 이익이 있다 그러면 타작물 농사를 계속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렇지요. 맞습니다.

○**홍문표 위원** 그런데 쌀농사로 다시 돌아간다 그것은 정책이 잘못된 거지. 임기응변식으로 정책을 내놓으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쌀농사를 짓는 것보다, 위원님들이 모두 얘기하고 농민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렇다면 타작물 재배하는 데 정책을 세워라 이거예요. 그러면 쌀농사보다 타작물의 수익이 더 낮다면, 이익이 있다면 그 농사를 계속 지을 것 아닙니까? 국민 식생활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우리가 연구하면 나오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과거 등식으로 놓고 갑론을박을 계속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요.

차관께서 바빠서 못 가 보셨겠지만, 작년에 구라과 쪽에 혹시 가 보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못 갔습니다.

○**홍문표 위원** 제가 한번 잠깐 가 보니까 식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쌀이라는 개념을? 그런데 우리도 식량 개념을 이제 포괄적으로 가져가야 할 때가 됐다고 봐요. 쌀 하나만 갖고 주식이라고 봐서는 안 돼. 보리·콩·밀·옥수수 이 오곡을 식량 개념에 포괄적으로 넣을 때가 됐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전쟁이 일어나고 기후변화가 왔을 때 쌀 하나만 먹고 전쟁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포괄적 개념으로 농림부가 계획을 세우면 저는 쌀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식량은 안보지만 결론에 가서는 좀 무식하게 얘기해서 무기입니다, 무기. 식량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념의 정리를 농림부가 이 기회에 잘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식량이라는 이 가치를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먹는 생명산업으로 보지 말고 안보에서 무기로까지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제발 ‘쌀값이 올라가면 식품비가 올라간다’ 이 이야기는 농림부가 하면 안 됩니다. 또 나오지 않게 좀 조심해 주시고.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차관께서는 오랫동안 농정에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리라고 보고 이제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세요.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놓는 것이 문제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르지 않으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차관께서 이왕에 중책을 맡아서 하

니까 쌀 대책 문제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쌀 작황 통계가 언제쯤 나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생산량 말씀이신가요?

○**홍문표 위원**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생산량 통계는 저희들은 9월 15일 날 농진청에서 작황조사한 결과로 일단 수확기 대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홍문표 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얘기를 못 드리는데 평년작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농촌에 가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기껏 물어보면 일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년작 이하……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한번 정보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그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안호영 위원님.

○**안호영 위원** 차관님, 그러니까 우리 법체계나 정부에서도 결국은 농산물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또 소득을 안정시키는 정책은 주요하게 추진해야 되는 정책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것을 위해서 양곡관리법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급 안정이나 소득 안정을 위해서 하는 수단으로 생산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사전에 하는 게 생산 조정일 거고 그다음에 사후에 하는 게 시장격리 이런 거겠지요.

그런데 지금 양곡관리법상 시장격리할 수 있는 요건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를 넘어설 때 격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1년 사례를 보면 실제 생산량 대비해서, 그러니까 초과생산량이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게 좀 늦게 결정을 한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상황이야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안호영 위원** 아니, 통계치로 봐도 생산량이 388만t이고 수요량이 361만t, 물론 이게 맞는지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초과생산량이 정부 통계에 의하더라도 27만t이고, 그것 보면 초과생산량이 3%를 넘어서기 때문에 요건에는 맞는 것인데, 그런데 실제로 시장격리를 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어지고 또 그것도 여러 차례 나누어서 하고, 시점도 효과가 큰 수확기에 해야 되는데 늦춰서 하고 그다음에 나누어서 하고 격리 방식도 역

경매 방식으로 하고 결과적으로 그런 걸 보면…… 그게 물론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시작을 해서 윤석열 정부까지 계속 이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면 결과적으로 쌀값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는 쪽으로 쪽작동을 했다, 의도성이 있는지 없는지…… 의도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실제로 작동된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쌀값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지금 한 20% 넘게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요.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양곡관리법을 우리가 개정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2021년도 사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결국은 현행법 취지로 보면 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정부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할지 말지 이런 게 전부 다, 할지 말지 언제 할 건지 가격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재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실제 가격이 말하자면 아주 고무줄처럼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실제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책으로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것은 시장경제 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나 혹은 기재부의 그런 논리가 거기에 바탕이 되어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일견 그 부분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농업이라는 문제는 시장경제에 맡길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자율성에 맡기는 것만으로는, 이게 농업의 특성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낸 법안대로 이것은 자동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고, 다만 아까 차관님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계속해서 생산량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면 된다고 보고.

또 관련해서 여기 신정훈 의원님 낸 안도 있지만 입법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과잉 생산될 수 있는 것들은 사전에 우리가 생산 조정을 통해서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만약에 의무화를 하면 정부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요건이 발생했을 때, 초과 생산될 수 있고 재정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먼저 선제적으로 사전 생산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세워서 실제 생산 조정이 되면 저는 그 요건이 발생하지, 시장격리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장격리는 요건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시장격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그래서 재량의 폭을 줄여 놓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보완책으로는 사전에 생산 조정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도 두 가지를 병행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실제로 20만 원대의 쌀 가격을 유지했고요. 2017년도에 시장격리했고 그다음에 그 뒤에는 계속해서 생산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잘 관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생산 조정을 안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거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런 걱정하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특히나 이게 지금 쌀값 문제 때문에 농민들 걱정이 상당히 큼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리를 좀 하고 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는 입법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예, 위원님.

다음에는 최춘식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차관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농가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소득이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농촌이 만족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쌀 문제 때문에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소비량 감소와 더불어서 또 과잉 생산 이런 것이 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가 어떤 것이든 생산물에 대해 가지고는 과잉공급이 될 수도 있고 공급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수요가 폭증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경제 체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농산물에 대해 가지

고는 그런 것이 좀 큰 문제가 돼서 농가의 어떤 정책 실패로까지 이어지고 하는 것이 현실의 상황이고 또 지난 과거의 일이기도 합니다.

우선 정책적인 것 한번 좀 여쭙보겠습니다.

쌀을 대체하는 작물로서 콩하고 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쌀하고 밀을, 내가 벼를 심어 가지고 쌀을 생산해야 될 데다 콩이나 밀을 재배해서 생산된 물량을 처분했을 때 쌀을 재배한 것과 같은 소득이 보진된다고 한다면 그거 안 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차관님 생각에 농민들이 콩이나 밀을 심어서 쌀을 생산한 것 같은 소득이 보장된다고 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현실적으로 왜 농가들이 여름에 콩을 안 심고 쌀을 심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득의 문제, 그러니까 소득 차이는 과거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극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최근에도 보면 쌀 소득이 콩 소득보다는 헥타르당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이 좀 안 되는 금액이……

**○최춘식 위원** 높은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높습니다, 쌀이.

두 번째는, 쌀은 농사짓기도 편하고 처리하기도 편하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쌀은 벼농사 기계화가 거의 100% 수준이기 때문에 농가들 입장에서 농사짓기가 편하거든요. 그리고 생산을 해 놓으면 어찌 됐든 국가가 사 가고 RPC가 사 주고 그러니까 처분이 쉽지요. 그런데 다른 작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건 다음 문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니까 지금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정부가 콩이나 밀을 재배하는 것이 훨씬 수급 조절에 좋다고 해서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농가는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거기에 걸맞은, 소위 말하면 대등한 소득 보전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걸 농가에서 또 농촌에서 따를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선은 고민거리로 우리가 작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한번 차관님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인데요.

제 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콩과 밀을 재배해서 생산했을 때 우리가 벼를 재배해 가지고 쌀을 생산할 때와 같은, 거의 걸맞은 수준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 그렇다면 조금 힘들어도 하지 않

겠습니까? 왜냐하면 팔기 좋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따라 주지 않는다면 아마 농가에서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정부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농림부의 과제가 저는 이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같은 대등한 수준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 어떤 방법이든, 보전이든 아니면 보조든 아니면 다른 생산 물량에 대한 것이든 어떤 걸 가지고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콩과 밀을 많이 생산했을 때 지금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양이 줄어듭니까? 더 수입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할당량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일정 부분 줄어 들 수 있습니다, 수입량은.

**○최춘식 위원** 일정 부분 줄어 들 수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수입 물량과 무관하게 우리가 생산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저희가 속된 말씀으로 공염불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한번 맞춰 봐야 될 그런 수치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경기도 지역 내 농협장들 몇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량이 어떨 것 같으나, 예측을 한번 해서 좀 알려 달라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기 북부 쪽은 작년도하고 거의 보합세 내지는 약간 생산량이 줄어 들 것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기 남부 쪽은 오히려 생산량이 늘어날 거라는 예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가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전체, 전국적으로 우리가 작년과 보합세 내지는 약간의 풍년 내지는 약간의 생산량 감소 이런 것이 있다면 현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시장격리에 대해 가지고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일단 저희들이 9월 15일 날, 농진청에서 작황조사를 할 때 사실은 그 작황조사를 그냥 대충하는 건 아니고 되게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전국적인 상황을 다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정확한 예상을 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최춘식 위원** 그래서 9월 15일 날 작황에 대한

조사와 예측이 되면 거기에서 대략적인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량이 얼마만큼 증가할 수 있고 시장에 얼마만큼 나와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 정도 가지고는 시장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다시 시장격리는 시작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어찌 됐든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수확기 대책을 빨리 만들어서 9월 말에는 발표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춘식 위원 저는 지금 양곡관리법에 의무적으로 우리가 시장격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법안과 별개로, 이 말씀은 제가 지금 금년도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현재 나와 있는 것이 도저히 수급 내지는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시장격리는 다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뭐……

○최춘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을 이번 달 안으로 발표해 주실 수 있겠네요,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조금 쉽지 않은 작업이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9월 말 중에는, 9월 중에는 발표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최춘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걸 제 제안입니다. 지금 콩과 밀에 대한, 대체작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발표된 사항 보니까 40대 남성이 1년간 소비하는 쌀의 양이 57kg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렇다면 4인 가족 40대 부부가 살아가는 데 1년간 먹을 수 있는 쌀의 양이 두 가마니, 이게 160kg를 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런 적체 현상이 나타날 텐데, 지금 우리가 고품질미 중·저질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고품질미라고 하면 정말 밥맛 좋은 것만 골라서 먹는 겁니다. 그런 쌀로 봤을 때 20만 원 정도에서 지금 판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연간 한 40만 원 정도의 주식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질미를 식량으로 가져가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아예 재배하는 형태를 바꿔서 어느 지역의 어느 땅은 그냥 중질미 내지는 저질미를 생산해 가지고 바로 사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은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결국은 그 방법도

소득차 보전과 관련되는 문제가 핵심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최춘식 위원 물론입니다. 보전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산된 양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고품질미보다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 가지고 아예 시장의 물량을 조절해 주는 건 어떠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일단 기술적으로는 저희들이 전에도 그 방법을 생각해 봤었고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논 타작물 재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콩을 심든 조사료를 심든 다른 작목을 심게 하는 것 그다음에 쌀을 심게 하되 만약에 풍년이 예상되면 수확기 직전에 사료용으로 공급하는 것.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전략작물 직물을 고민했던 거거든요.

물론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아주 실효성이 높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전략작물 직물을 통해서 여름철에 벼 대신에 콩이나 가루쌀을 심는 농가에게 소득을 지원해 주자, 이게 현재 상태에서 저희는 가장 효과적인 타작물 재배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차관님, 한 가지만 더 여쭙보고 끝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 가지고 중질미를 생산해서 사료화하거나 주정용으로 또는 가공용으로 사용을 했을 때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 현미 우리가 수입을 줄일 수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것은 어렵습니다.

○최춘식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도 과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려가 돼 가지고 한번 여쭙보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과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쌀보다는 콩이라든지 가루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쌀이 아닌 품목을, 다른 품목을 심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최춘식 위원 이렇게 대체하더라도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줄일 수 없다는 뜻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최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저도 짧게 한 말씀만 드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신 것

은 쌀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기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주로 말씀을 주셨고요.

실제로는 이런 부분들에 농민들은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이런 것은 정부가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할 일이다’ 이렇게, 지금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차관님께서 ‘시장격리 의무화 이 법이 통과되면 수급 기능을 거의 포기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말 듣고 화가 나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러 가지 정책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쌀값을 안정화하는 일, 이것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농림부의 일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고물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다시 농민들을 희생양 삼아 가지고 쌀값을 지금 이렇게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다.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국회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다 그러면요 지금 농민들 죽어 가고 있는 것에 팔짱 끼고 있는 것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시장 개방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한 이면에는 농민들의 희생이 있었잖아요. 쌀값과 관련해 가지고 그 정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 못 합니까? 저는 이 법을 통과하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에 힘을 실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결절차 남아 있는데요, 잠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시장격리 의무화 방안 또 매입가격 결정 방식, 논 타작물 재배 근거 마련 여기 법안에 대해서 반대만 하지 마시고 수정 대안을 한번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승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신정훈 위원님.

○신정훈 위원 저는 오늘 양곡관리법 처리와 관련해서 현행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미곡의 시장격리 요건을 법률에 상향시켜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이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해당 연도의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며 벼 및 논 타작물 재배면적 관리정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안을 대안으로 담아서 상정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신정훈 위원님의 안건이 의제가 되려면 국회법 제71조에 따라서 1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자가 있기 때문에 신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건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안건을 하시려면 여야 간사님끼리 뭐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위장에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소위원장 김승남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여야 간사끼리 협의를 해서 안건으로 올려야 되지……

○박덕흠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승남 잠깐만요. 그러면 이의 있을 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신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희용 위원 이의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말씀하십시오, 정희용 위원님.

○정희용 위원 그것을 여야 간사님끼리 협의를 해서 안 하고 지금 정부 측에서 이견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신정훈 위원님 안으로……

○소위원장 김승남 그동안에 충분히 논의를 했고 또 우리가 정부 측의 의견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정희용 위원 이게 정부 측 이견이 있고 지금 9월 달에……

○소위원장 김승남 그리고 여당 간사님하고는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전에.

○최춘식 위원 누구하고요?

○소위원장 김승남 이양수 의원하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홍문표 위원 이양수 의원하고 무슨 얘기를 했어요?

○박덕흠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국회에 우리 위원회의 소위원회 관례도 있는 건데……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소위에 다 들어가 봤지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서로 이견이 1명 있으면 그걸 또 받아들이어서 다음 한 번 또 하고 하면서 설득을 해가지고 소위를 통과시켰지. 그냥 뭐 한 번 얘기해서 위원장님이 방망이 땡땡 두드리고 이러시면 여기가 대한민국 국회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이쪽에서도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고 여러 가지 사안도 있으니까 이쪽도, 여당 입장도 좀 들어 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기회도 안 주고 방망이부터 두드리시면……

○소위원장 김승남 위원님들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원칙에 다 동의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박덕흠 위원 아니아니요, 그 원칙하고는 다르지요.

우리는 시간을 두고 이것을 논의를 좀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농민들한테도 얘기를 더 들어보고 또 이게 밭 타작으로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만나서 수익이 되느냐 어쩌냐 얘기도 들어 보아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소위원장 김승남 지금까지 전부 다 청취를 했고 또 관계부처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의견을, 우리 의견들이 전달됐습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최춘식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소위원장 김승남 이의가 이렇게 있으면……

○최춘식 위원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사실 모든 것이 아까 논의 과정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문안 작성하고 대안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그러면 그 문구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서로 확인할 필요조차도 없다는 겁니까?

○소위원장 김승남 방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신정훈 위원.

○최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신 거지 우리가 문안 가지고 한 번 확인한 적도 없잖아요.

○소위원장 김승남 그 내용 두 가지 있는데요.

○최춘식 위원 그리고 이양수 의원님은 우리 간사시지만 소위의 간사는 아니잖아요.

○소위원장 김승남 시장격리 의무화하는 안하고요 그다음에 타작물 재배의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원에 대한 근거. 그 두 가지입니다.

○최춘식 위원 그 작성된 안도 이렇게 보지도 않고 바로 통과시켜요?

○박덕흠 위원 소위 자체에서 이게 서로 이견이 있으면 그걸 절충을 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키면 됩니까, 이게?

○소위원장 김승남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 및 제112조제3항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위원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박덕흠 위원 위원장,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소위원장 김승남 위 안전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최춘식 위원 왜 이런 식으로 해!

○정희용 위원 상임위 시작해 놓고 법안소위를 처음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최춘식 위원 아니, 소위는 원래 합의로 하는 것 아니에요!

○정희용 위원 합의를 해야 되지, 거수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박덕흠 위원 아니, 합의를 해야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홍문표 위원 아니, 이런 회의를 언제 했어요, 우리가?

○소위원장 김승남 이게 어떻게 일방적이에요, 2시간 동안 논의를 했는데요!

○박덕흠 위원 2시간을…… 필요하면 며칠이라도 해야지요!

○정희용 위원 논의를 하고 다음 소위를 잡고 이렇게 해야지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승남 거수 안 한 사람은 다……

○신정훈 위원 아니, 2시간 동안 국힘당 위원님들도……

○박덕흠 위원 이 법안이 2시간 동안 해서 해결될 문제입니까, 이게?

○소위원장 김승남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표 위원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 봤어요?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하고 있나?

○박덕흠 위원 아니, 지금 거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희용 위원 제대로 이야기도 안 해 주고 거수부터 하자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승남 아니, 그러니까 거수해 주세요.

(거수 표결)

그러면 기권입니까?

○박덕흠 위원 이게 어느 나라예요?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왜 이러십니까, 이것?

○최춘식 위원 문안을 작성해서 회람도 안 시켜요!

○이원택 위원 지금 이 문제는 농민들 입장에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박덕흠 위원 지금 이것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논의를 더 하자는 것 아닙니까!

○정희용 위원 누구는 농민들 입장을 생각 안 합니까? 지금 다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차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원택 위원 예를 든다면 10월에 가면 농민들 인건비나 자재비 인상 때문에……

○안호영 위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2시간 넘게 충분히 토론했다고 봐요.

○이원택 위원 소득 감소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속하게 처리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문표 위원 위원장님, 의견 주세요.

○소위원장 김승남 표결 결과 재석 9인, 찬성 5인, 기권 4인으로 위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희용 위원 김승남 위원장님, 진짜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래서 상임위가 되겠습니까?

○최춘식 위원 아니, 소위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소위원장 김승남 아니, 찬성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홍문표 위원 아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위원장이? 정부 측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10분이고 20분 준다고 그랬잖아요?

○소위원장 김승남 정부 대안을 갖고 와야지요. 안 갖고 왔지 않습니까?

○홍문표 위원 들어 보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 일방적으로 해서 올려 놓고서 방망이 두드려? 이런 국회가 어디가 있어요?

○이원택 위원 전체회의 때 수정안 대안을 가져오면 검토하시지요.

○홍문표 위원 이런 국회가 어디가 있냐고, 이게!

○소위원장 김승남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정부, 의원실 및 위원회 그리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 ○출석 위원(9인)

|       |       |       |       |
|-------|-------|-------|-------|
| 김 승 남 | 박 덕 흠 | 신 정 훈 | 안 호 영 |
| 윤 준 병 | 이 원 택 | 정 희 용 | 최 춘 식 |
| 홍 문 표 |       |       |       |

#### ○출석 전문위원

|             |       |
|-------------|-------|
| 수 석 전 문 위 원 | 권 영 진 |
| 전 문 위 원     | 박 병 섭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             |       |
|-------------|-------|
| 차 관         | 김 인 중 |
| 기 획 조 정 실 장 | 강 형 석 |
| 농 촌 정 책 국 장 | 이 상 만 |
| 농 업 정 책 국 장 | 박 수 진 |
| 축 산 정 책 국 장 | 김 정 욱 |
| 정 책 기 획 관   | 박 순 연 |
| 식 량 정 책 관   | 전 한 영 |
| 식품산업정책관     | 양 주 필 |
| 농업생명정책관     | 송 남 근 |